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이내성

목 차

제1절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절 행정자료 통계활용의 장단점과 이론적 모형	4
1. 행정자료 통계활용의 장단점	4
2. 이론적 모형	6
제3절 조사항목 국제비교	9
1.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와 조사항목	9
2.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국가의 조사항목	16
제4절 국제 항목선정 기준과 조사항목 권고안	27
1. 유엔(1998년)의 항목선정 기준	27
2. 유엔 및 ECE/Eurostat 조사항목 권고안	28
제5절 우리나라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31
1. 항목 평가방법	31
2. 평가기준	32
제6절 조사항목 평가결과	39
1. 중요도(이용우선순위) 평가 결과	39
2. 대체이용가능정도 평가 결과	45
3. 종합 평가	47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77
1. 결론	77
2. 정책적 제언	78
<부 록>	8

표 목 차

<표 1> 우리나라 센서스에서 전수표본조사 실시년도	11
<표 2>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센서스의 조사항목수	11
<표 3> 실시 연도별 총조사 항목표(1960~2005년)	12
<표 4> 노르웨이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19
<표 5> 스웨덴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21
<표 6> 덴마크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23
<표 7> 핀란드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26
<표 8> 유엔 권고 2000년 라운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29
<표 9> ECE/Eurostat 권고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30
<표 10> 중요도 점수 부여 방법	33
<표 11> 중요도 점수 기준표	33
<표 12> 경제활동상태 실시년도별 현황	33
<표 13> 경제활동상태 관련 자료 비교(2006년 12월 기준)	34
<표 14> 대체이용가능군 구별	35
<표 15>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 행정자료 비교	36
<표 16>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유형별 인구(5세 이상)	38
<표 17> 등록장애인수	38
<표 18> 중요도별 항목 현황	40
<표 19> 조사항목별 중요도별 평가 결과	41
<표 20> 대체정도별 항목 현황	46
<표 21> 중요도별 대체정도별 현황	48
<표 22> 주민등록번호체계	51
<표 23> 구주소와 새주소체계	52
<표 24>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차이	58
<표 25> 가족관계등록 행정자료 주요 기재 사항	60
<표 26> 외국인 현황	67

그림 목차

[그림 1]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행정자료의 기본틀	8
[그림 2] 스웨덴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구성도	20
[그림 3] 핀란드 행정등록 기반 센서스 구성도	25
[그림 4] 중요도 평가기준	32
[그림 5] 호구조사제도의 시대별 흐름	53
[그림 6] 총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관계	54
[그림 7] 조사장소와 신고장소	56
[그림 8] 가구주와의 관계	63
[그림 9]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행정자료	66
[그림 10] 출입국자 통계의 범위	67
[그림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영역도	69
[그림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69
[그림 13]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상의 교육정도	71
[그림 14]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74
[그림 15] 건축년도,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74
[그림 16] 주택의 소유	75
[그림 17] 총방수	76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현대사회는 도덕이나 법률 등 사회구조와 인간의 습관이나 태도,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에 1인 가구원이 222만 명으로 전체의 15.5%였으나, 2005년에는 95만 명 늘어난 317만 명으로 20.0%를 차지하고 있는 등 1인 가구, 노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순누락률은 1995년 1.3%, 2000년 1.6%에서 2005년 0.9%(총오차률 3.9%)로 나타났다. 전국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실시됨에 따라 오류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조사비용 측면에서도 급격한 사회 변화 대응에 1980년 43억 원, 1990년 244억 원, 2000년 969억 원, 2005년 1,2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반해 장기간의 자료처리로 조사자료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 국가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의 활용은 서로

2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다른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적은 비용으로 시의성 있게 다양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통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주관성이 배제된 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등록 자료에 기반을 둔 총조사는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대신할 수도 있으며, 적어도 총조사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이나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신뢰성과 시의성 확보 측면에서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조사항목에 대한 문제점 및 이용 가능성 진단과 조사항목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특성 파악으로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리는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로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은 가장 필수적인 자료인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조사항목선정에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기존 항목과 Grobal 시대에 국제결혼과 다문화 등 향후 새로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항목에 대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항목에 대한 행정자료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행정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항목에 대해 중요도(이용우선순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자료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검토하여 완전대체가능항목, 불완전대체항목, 대체불가능항목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과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가능한 행정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수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

< 연구의 수행 절차 >

(1) 자료의 준비

총조사에 대한 국제비교 등 사전 지식의 획득을 위해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실시 국가의 조사항목에 대한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2) 조사항목 비교 및 중요도(이용우선순위) 평가

유엔(1998)과 ECE/Eurostat 항목선정 기준을 알아보고, 국제비교성, 국가·지자체 필요성, 시계열 유지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중요도(이용우선순위)를 평가한다.

(3) 대체가능성 평가

항목의 응답가능성 및 적절성 측면에서 행정자료를 분석·검토하여 완전대체, 불완전대체, 대체불가 등 3개 군(群)으로 구분한다.

(4) 종합평가 및 항목선정

중요도별 대체(이용)가능군별 분류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항목을 선정한다.

(5) 주요 행정자료 활용성 검토 및 결론

선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행정자료의 활용성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2절 행정자료 통계활용의 장단점과 이론적 모형

1. 행정자료 통계활용의 장단점

행정자료를 통계로 활용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논해 보면 많은 장점들이 있듯이 단점들 또한 통계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다음의 장단점은 행정등록만을 사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지만 다른 통계에도 공통적으로 가능하다.

행정등록 자료를 통계로 활용하는 경우 장점으로 주로 지적하는 것이 응답자 부담경감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통계작성주기의 축소, 적은 비용소모, 중복조사 배제, 다양한 통계의 생산, 주관적 응답 배제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열거할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으로 모든 자료를 매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표본조사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이들 수요에 부응하는 경우 조사결과와 집계기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의성이 있는 통계작성이 어려우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매년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시의성이 있는 통계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 사례로 핀란드에서는 등록시스템의 도입으로 고용, 건물 및 주거, 주택현황에 대한 통계가 연간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통계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2003년 기준 가격으로 1980년 인구센서스 비용은 3,500만 유로보다 적게 소요되었고, 10년 주기로 생산되는 통계의 양은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비용은 1개 주요 조사비용의 1/3로 감소했다. 또한 행정자료를 많이 이용했던 1980년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850만 개의 조사표, 100백만 개의 질문 조사표에 사람당 10분이 소요되어도 총노동 투입은 2백만 시간이고, 시간당 비용이 10유로라면 조사표 작성에 15백만 유로의 기회비용이 소요되었는데 행정자료 이용으로 응답자들의 이런 기회비용이 절감되었다.

세 번째 장점은 더 많은 통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등

록은 모든 단위에 대해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의 지역통계나 우편코드 구역통계 등의 생산이 가능하며, 또한 다양한 등록자료들을 연결하여 다양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네 번째 장점은 통계에 주관적 의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경우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자료가 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끔 몇 시간 일한 학생은 조사에 학생이라고 대답하지만 ILO기준에 의하면 고용된 것으로 분류하는데 등록자료를 이용할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다섯 번째 장점은 소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조사의 경우 혼인상태, 종교 등 자주 변경되지 않는 내용을 조사 때마다 질문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거부를 유발할 수 있고 조사시간도 길어지지만, 행정자료를 이용할 경우 한번 정보를 수집하여 1개의 파일로 만들고 그것이 변했을 때 변동된 내용만을 가공하면 되기 때문에 반복조사의 무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장점은 행정자료의 이용이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이라고들 하지만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조사는 조사표에 글로 기입하고 조사표 입력, 내검 등 조사표 처리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등록자료는 오히려 정보가 파일에 담겨져 있어 열람이 어렵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료의 보호 또는 개인의 비밀보호가 가능하다.

일곱 번째 장점은 통계청의 업무 집중 및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등록자료의 이용으로 조사표 디자인, 테스트, 인쇄관리, 발송, 독촉장 발송, 조사표 코팅 등의 과정이 없어져 통계청 직원들의 업무를 통계생산과 분석에 집중할 수 있어 직원들의 자질이 향상된다. 그밖의 장점으로 행정자료의 활용으로 응답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고, 식별 코드를 이용하여 유량(flow)통계의 작성이 가능하며, 다른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자료에 기초한 통계 생산은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단점은 자료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 및 법률 개정 또는 다른 행정적 변화가 등록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자료 공급자의 정보 시스템 변경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변화에

대한 정보가 가능한 한 빨리 통계청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통계청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 그 자신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자와 긴밀한 협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단점은 등록 그 자체가 모든 단위를 포함할지라도 등록의 대표도가 어떤 자료에 대해서는 불완전할 수 있으며, 일관성 문제가 다른 등록을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점은 조사의 질문항목이 등록에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예로 대표적인 것이 가구간 소득이전이다.

네 번째 단점은 등록 내용이 통계작성과 관련된 국제 권고와 일치하지 않아서 통계의 국제 비교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2. 이론적 모형

서로 다른 행정자료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문건이나 서식에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연계키(matching key)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행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actor) 모두에게 행위자 개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체별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렇게 부여한 코드를 모든 행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의 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있다. 먼저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이다. 그렇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고유한 코드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코드가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고유한 코드를 하나씩 갖고 있다. 또한, 1962년부터 40여 년 동안 모든 행정에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행정자료의 연계키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법인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 이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코드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차이는 이 번호를 국세청 이외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인체는 여러 사업체나 사업장의 집합체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국 규모의 법인체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하여도 관계

가 없지만, 지역마다 있는 서비스센터나 유통망의 지방세, 건물의 방재, 범죄 발생, 근로감독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동사무소와 구청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법인체를 식별하는 고유 코드는 지역별 사업체를 식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법인 소속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각각의 행정 서류를 연결하여 국세, 지방세, 지역 행정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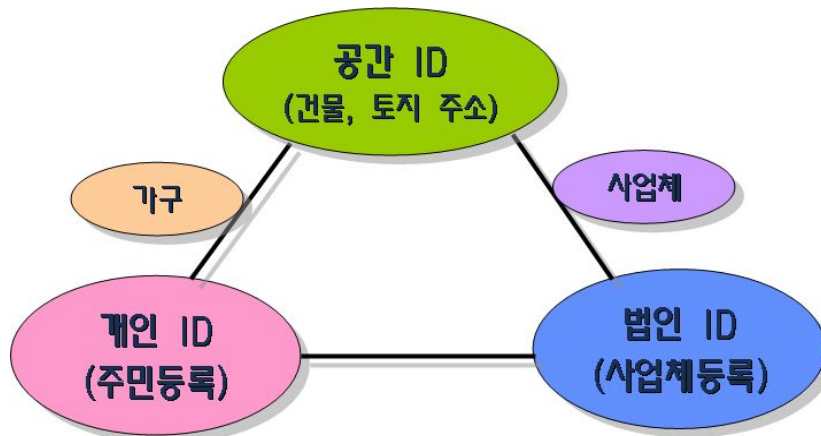
그렇지만 사업체 수준의 법인에 대한 고유 코드를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국세, 지방세, 산업, 노동, 복지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 수준의 법인 코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행정자료 결합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코드 개발에서 코드를 부여할 사업장 및 사업체의 수준과 관할지역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코드에서 적어도 모법인, 관할지역, 산업 분류 등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은 권역별로 나뉘어 관리되기 때문에 행정대상의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적 위치(spatial location)를 파악할 수 있어야 행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앞서 예로 든 전국 규모의 법인체의 경우 개별 서비스센터의 관할 동사무소, 구청, 시청을 알기 위해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서에서는 주소를 사용한다. 이때 주소는 개인과 법인별로 고유한 주소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하나의 주소와 상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이나 법인을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도청 및 시청이 여럿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주소인 지번체계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농촌경제 시대에 만들어진 필지 중심의 지번체계로는 건물과 건물 안에 있는 거처 및 사무공간을 식별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새주소 체계는 건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번체계보다는 고유한 코드에 한 걸음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건물 내부의 거처와 사업장을 식별하는 체계까지 갖추지는 않았다. 행정자료 결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든 거처와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체계를 만들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8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이제 행정자료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별, 사업체 수준의 법인별, 이들이 속한 공간별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코드가 있어야 하며, 이 코드를 모든 행정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림 1]은 이를 도형화 한 것이다. 이 그림은 공간에 대한 고유 코드(공간 ID)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행정자료만으로 같은 공간 ID를 가진 개인의 고유번호(개인 ID)를 모으면 가구(household)가 된다. 또한 같은 공간 ID를 가지고 또 같은 법인 ID를 가진 사업장들을 묶어 사업체(establishment)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자료만을 결합하여 가구와 사업체를 식별하여 행정이 수월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림 1]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행정자료의 기본틀

제3절 조사항목 국제비교

1.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와 조사항목

가. 개황

1) 목적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각종 가구관련 경성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법적근거

재정경제부령 제143호, 지정 조사통계로 승인번호 인구총조사(제10101호), 주택총조사(제10102호)이다.

3)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0년과 5년으로 끝나는 해에 11월 1일 0시 현재 기준 전국의 거주인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된다.

4)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

- ① 해외취업, 취학중인 자
- ② 외국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
- ③ 국제연합소속기관 외국직원, 수행원 및 가족
- ④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5)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총44개로 전수조사 21개, 표본조사 20개, 시도 특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조사방법

2000년 조사는 기존의 면접타계식 방식에 부분적으로 자계식 방식을 적용하였고, 2005년 조사는 인터넷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나. 조사연혁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최초 인구센서스는 1925년에 실시된 「간이국세조사」이다. 이후 일제하에서 5번 실시되었으며, 1930년에 실시된 「조선국세조사」에서 처음으로 경제활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처음 실시된 1949년 「총인구조사」에서 최초로 인구가동사항을 조사하였다. 196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최초로 주택조사와 20%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1985년에 실시된 「인구 및 주택센서스」에서는 성씨, 본관 및 종교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통근·통학 항목을 추가하였고, 1995년 조사에서는 빈집조사표를 사용하였다. 2000년 조사는 수치지도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면접타계식 방식에 부분적으로 자계식 방식을 적용하였다. 2005년 조사는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인터넷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처리는 물론 인적·물적 자원관리, 사이버 교육, 현장조사 지원 등에도 IT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공표시기가 지난 2000년에 비해 3~7개월 단축하여 총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성이 보다 현실화되었다.

<표 1> 우리나라 센서스에서 전수·표본조사 실시년도

항목 조사방법	실시 횟수	센서스 실시년도
전항목 전수조사	9회	1925, 1930, 1935, 1940, 1944, 1949, 1955, 1960, 1985
일부항목 표본조사		
5% 가구	1회	1975
10% 가구	7회	1966,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표 2> 우리나라의 인구·주택 센서스의 조사항목수

(단위 : 개)

연도	계			전수			표본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주택	계	인구	가구·주택
1925	5	5	-	5	5	=	-	-	-
1930	9	9	-	9	9	=	-	-	-
1935	6	6	-	6	6	=	-	-	-
1940	8	8	-	8	8	=	-	-	-
1944	9	9	-	9	9	=	-	-	-
1949	12	12	-	12	12	=	-	-	-
1955	11	11	-	11	11	=	-	-	-
1960	36	18	18	36	18	18	-	-	-
1966	14	14	-	8	8	-	6	6	-
1970	31	17	14	15	8	7	16	9	7
1975	28	19	9	11	6	5	17	13	4
1980	45	25	20	26	6	20	19	19	-
1985	30	16	14	30	16	14	-	-	-
1990	45	21	24	33	11	22	12	10	2
1995	28	16	12	17	7	10	11	9	2
2000	50	29	21	20	8	12	30	20	10
2005	44	27	17	21	9	12	23	18	5

<표 3> 살시 연도별 총조사 항목표(1960~2005년)

□ 인구항목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총 계	37	15	31	28	39	30	45	28	50	44
전 수	37	9	15	11	23	30	33	17	20	21
표 본	-	6	16	17	16	-	12	11	30	23
기본항목 계	10	9	8	6	7	7	6	7	8	8
성명	●	●	●	●	●	┌	●	●	●	●
본관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	●	●	●	●
성별	●	●	●	●	●	●	●	●	●	●
연령(생년월일)	●	●	●	●	●	●	●	●	●	●
교육정도		●	┌	┌	┌	┌	┌	┌	┌	┌
- 졸업여부	●	●	└	└	└	└	└	└	└	└
- 취학여부	●	●	●	┌	┌	┌	┌	┌	┌	┌
- 수학연수	●									
- 전공학과					○				○	
- 문맹여부	●	●	●							
혼인상태	●	●	●	●	●	●	●	●	●	●
종교						●		●		●
국적	●									
남북이산가족										●
인구이동 계	1	-	2	1	6	3	7	5	7	5
출생지	●		○		○	●	●	○	●	
전 거주지										
- 1년전 거주지					○	●	○		○	
- 5년전 거주지			○	○	○	●	○	○	○	○
통근(학) 여부					○		●	┌	○	○
통근(학)지					○		●	└	○	○
통근(학) 시간							●	○	○	○
이동교통수단					○		●	○	○	○

주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는 항목합계 수치에 불포함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출산력 계	1	2	1	2	2	3	4	-	1	3
초혼연령				○	○		○			○
총출생아수	●	○	○		┌	●				○
- 사망자녀수				○	└	●				○
- 동거자녀수					○					○
- 별거자녀수										
생존아수						●	○			
추가계획자녀수										○
*지난년간 출생아수		○								
경제활동 계	7	4	6	10	7	3	4	4	5	5
경제활동상태			○	○	○	┌	┌	┌	┌	┌
- 취업여부		○	○	○	○	●	○	○	○	○
- 구직(활동)여부	●			○	○					
- 취업가능성							┌		○	○
비구직이유	●									
주로 한 일	●									
조금이라도 한 일	●									
근로장소										○
취업형태				○	○					
취업시간				○						
취업기간(개월)			○							
추가취업희망				○						
종사상의 지위	●	○	○	○	○		○	○	○	○
산업	●	○	○	○	○	●	○	○	○	○
직업	●	○	○	○	○	●	○	○	○	○
개인소득				○						
현직업근무년수									○	
활동제약 등 계	-	-	-	-	1	-	-	-	8	3
활동제약					●					○
생활비원천 주」										○
자녀거주장소주」									○	
생계수단 1」									○	
주부양자주」									○	
거동불편여부 1」									○	
아동교육									○	┌
- 어머니동거여부										○
컴퓨터활용상태									○	
인터넷활용상태									○	
개인휴대용통신기									○	

주 : 60세 이상

□ 주택항목

항 목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택 계										
거처의 종류										┌
- 건물층수										┌ ●
대지면적					┌		●	●	●	●
연건평			●		┌ ●	●	●	●	●	●
거주자능가구수						●	●			
총방수		┌	┌	┌	┌	┌	●	●	●	●
동거가구수		┌ ●	┌ ●	┌ ●	┌ ●	┌ ●	●			
건축년도	●		●	●	●			●	●	●
건물수선상태	●									
다가구주택						(●)				
집/거주의 개수	●									
건무내 입주여부	●									
지붕재료	●		○	○	●		●			
외벽재료	●		○	○	●		●			
편의시설 (부엌, 화장실 등)						●	●	●	●	●
* 주권 난방시설					●					
주택용도			○							
건물의 종류	●		●	●						

주 : 2005년도는 '거처의 종류' 항목이 주택항목으로 이동

2.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국가의 조사항목

전부 또는 대부분의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센서스 방식의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다.

덴마크는 1743년 출생, 사망 통계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1769년 처음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1924년 지방별로 인구등록사업을 시작하여 1968년에는 중앙인구등록을 실시하였다. 1970년 전통적 방식의 인구센서스를 마지막으로 실시하여 1976년 주택에 대한 정보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파악하고, 1978년 건물·거처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1981년 완전한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핀란드는 1749년 처음으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1880년 부터 10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등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행정자료간 연계 이용을 통해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양질의 자료제공이 가능해져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통계 등 변화하는 통계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769년 처음으로 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1964년 개인별 고유 번호를 중심으로 거주자에 대한 행정자료(the National Population)를 구축하였다. 1970년 부터 전통적 센서스 방식과 행정자료 연결한 혼합방식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1980년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관계 및 국적 등에 대해서도 행정자료의 이용을 확대하였고, 우편을 통한 조사를 소개하였다. 1990년 지역별 특성과 인구, 교육 및 소득에 대한 정보도 행정자료에서 수집하고 노동시장 자료 및 가구주택에 대한 자료는 표본인구조사로 실시 하였다. 2001년 센서스는 인구 및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주택 및 주거조건관련 변수에 대해서는 조사표 이용방식을 병행 하였다. 스웨덴은 1571년 부터 교구(parish)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무응답 비율의 증가 (스톡홀름 10%, 기타지역 2.8%) 등으로 1990년을 마지막으로 기존방식의 센서스가 실시되었다. 1995년에 국회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가 결정 되었다. 1947년 개인식별번호 도입으로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형성되었고, 1968년 개인식별번호를 포함한 체

계적인 행정등록 자료인 TPR(Total Population Register)을 구축하였으며, 1998년 개인식별 번호, 이름, 주소, 부동산, 교구, 출생지, 시민권, 가족관계, 수정, 발생시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TPR을 구축하였다. 이외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다른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들 국가 중 독일은 1987년 실시 이후 기존의 센서스 조사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막대한 비용, 사생활 침해 등으로 센서스의 실행을 중단하였다. 2001년 7월 센서스 시험조사를 위한 법을 공포하고, 2001년 12월 지자체 Gemeinde의 4%(약 14,500개 중 최대 570개), 건물의 2%(약 1,640만 개 중 최대 28,000개)에 대해 지자체 거주지 등록자료, 노동청 직업관련 자료,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서면조사 자료를 가구단위로 수합 활용하여 센서스 시험조사를 한 바 있다. 다음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4개국의 항목별 대체실시 연도 현황이다.

가.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769년 처음 인구센서스를 시작하여, 1801년에는 이름과 거주자의 상세내역을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890년 이후부터는 매 10년에 한 번씩 센서스를 시행해왔다. 한편 인구등록(Population Register)은 1964년에 설립되어 모든 국민이 개인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게 되었다. 1970년부터는 성, 나이, 혼인상태, 가족관계, 국적, 거주지 등의 상세정보는 인구등록에서 가져다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고 행정에 사용할 명부를 작성하였다. 1980년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조사항목을 대체하였으며, 조사에 우편조사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이후 등록자료에서 가져오는 정보는 점점 많아졌다. 1990년 센서스에서도 인구와 주택에 관한 정보 가운데, 고용과 직업, 통근·통학, 가구구성, 주거환경은 조사로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 약 28%의 표본조사를 했다.

2001년 센서스에서는 인구, 교육, 노동시장, 소득 관련 자료는 행정자료에서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행정자료가 좋아졌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특히 사업체의 위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체등록에 정확한 주소를 도입하여 토지, 주소, 건물 등록(Ground Property, Address,

and Building, 일명 GAB register)과 연계가 가능해졌고 검증 또한 가능해졌다. 또한 1999년에는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자의 등록도 갱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거처에 대한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등록에 있는 개인을 거처와 연결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거처와 가구 부분은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01년 센서스에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했다. 한편 2000년 국회(Storting)예산심의에서 거처별로 고유한 주소를 GAB Register에 등록하기 위한 거처주소 프로젝트(Dwelling Address Project)를 승인하였다. 이에 거처주소프로젝트와 주택센서스가 상호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센서스를 한해 늦추어 2001년 11월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제 노르웨이는 거처주소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완전히 행정자료로 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아직 완전히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는 시행하지 못하지만 30년 동안 꾸준히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로 진화해 온 모습을 보여준다.

<표 1>는 노르웨이 센서스에서 주요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한 연도를 표시한 것이다.¹⁾ 주택과 건물 관련 항목에서는 아직도 전적으로 조사에 의존하거나, 행정자료와 조사결과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항목들이 많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아파트(flat)에 관한 것이다. 2001년 조사에서 아파트의 개별 거처에 모두 번호를 부여했고 이를 인구등록과 주소등록에 모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아파트 거처는 모두 식별이 가능해졌다.

1) 여기 제시한 항목은 핀란드 센서스 항목을 기준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행정자료로 가장 많은 항목의 통계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표 4〉 노르웨이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인구관련	1990	사업체	•	편의시설
1980	성별	-	사회경제지위	•	거주기간
1970	혼인상태	1960	소득		건물관련
-	모국어		교육관련	•	건축기간
1970	국적	1990	교육정도	•	건축재
-	종교		가구관련	2001	건물의 주용도
	경제관련	•	가구종류/인원	•	주거단위의 수
1990	경제활동상태	•	가족종류/인원	•	난방시스템
1990	종사상 지위		주택관련	2001	건물의 좌표
1990	산업	•	주택 크기	-	복도면적
-	직업	•	방의 수	•	건물의 층수

-: 원래 공표하지 않는 항목

•: 아직 행정자료로 대체하지 못한 항목

출처 : 통계청(200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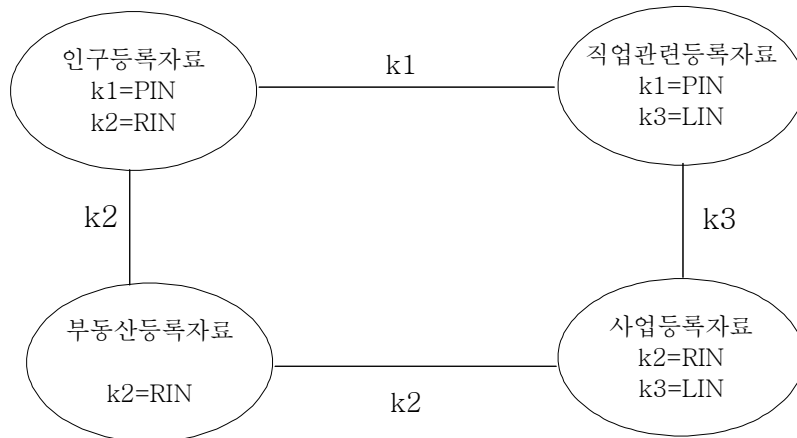
나. 스웨덴

스웨덴이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부터다. 이것은 스웨덴이 오랜 인구등록의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래 전 현대적 국가 이전에 교구(parish)에서는 주민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을 등록하였다. 거의 450년 전인 1571년이다. 또한 스웨덴 통계청은 1749년에 체계적인 국가통계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1860년도에는 최초로 인구·주택 센서스가 실시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비교적 이른 1947년도 도입되어 행정자료기반 통계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다.

1968년에는 개인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행정자료인 TPR (Total Population Register)이 구축되었다. 1998년도에는 기존의 정보를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TPR이 구축되었다. 새로운 TPR은 개인식별번호, 이름, 주소, 부동산, 교구, 출생지, 시민권, 가족관계, 수정, 발생시점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방식 센서스는 1990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었다. 무응답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수도인 스톡홀름 지역에서는 10% 정도, 기타지역에서는 2.8% 정도의 사람들이 응답을 거부했다. 이러한 무응답 비율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센서스비용으로 인해 1995년 스웨덴 국회에서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 통계청에서는 2000년도 센서스를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2005년에 행정자료로 완전 대체를 선언하였다(Bruhn).

스웨덴의 행정자료 기반 통계는 크게 네 개의 상호연계적인 행정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 인구등록자료, 부동산등록자료, 직업관련 등록자료, 사업관련 등록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은 이러한 구성체계를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



- K1: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인식번호) -인구등록자료
- K2: RIN (Residence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거처번호(Dwelling Identification Number) - 거주 및 건물관련 행정정보
- K3: LIN (Local Identification Number: Workplace Number,

[그림 2] 스웨덴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 구성도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통된 코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에서는 거처를 코드화한 RIN가 누락되어

있다. 거주지 코드 대신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거지에 고유번호 부여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198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만 번호 부여가 완료되었다. 특히 주거지 고유번호 등록을 과세업무와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하여 거주번호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각 행정자료의 유지와 보수는 정보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등록 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개인식별 번호, 거주지, 성별, 연령, 시민권, 출생지, 출생국, 소득 등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분기, 년별로는 성명, 주소, 출생교구, 출생국(외국인 경우), 이민여부, 가족관계, 부모 출생국 등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주거에 관한 항목 이외에는 대체로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표 5> 스웨덴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인구관련	1985	사업체	•	편의시설
1950	성별	•	사회경제지위	•	거주기간
1970	혼인상태	1950	소득		건물관련
-	모국어		교육관련	•	건축기간
1950	국적	•	교육정도	-	건축재
-	종교		가구관련	•	건물의 주용도
	경제관련	•	가구종류/인원	•	주거단위의 수
1985	경제활동상태	1985	가족종류/인원	•	난방시스템
-	종사상 지위		주택관련	1985	건물의 좌표
1985	산업	-	주택 크기	-	복도면적
•	직업	•	방의 수	-	건물의 층수

- : 원래 공표하지 않는 항목

• : 아직 행정자료로 대체하지 못한 항목

출처 : 통계청(200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다. 덴마크

덴마크는 1981년에 센서스를 전통적 전수조사에서 행정자료로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인구센서스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통계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덴마크는 오랜 센서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1743년에 징병의 목적으로 출생과 사망 통계를 작성하였고, 1769년 이래 지속적으로 센서스를 실시해 왔다.

센서스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기반은 1924년에 시행된 지방별 지방인구등록(Local Population Register)사업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8년에 갖추어진 중앙인구등록(Central Population Register) 체제는 행정자료 활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앙인구등록은 인구의 이중 등록을 방지하고 세금 공제 도입에 따른 세제 개혁에서 전국적으로 인구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었다. 이때 지방인구등록을 중앙에서 통합하기 위해 중앙인구등록의 개인번호와 주소지 번호를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개인 및 주소지 번호체계를 갖추어 행정자료를 행정전산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Borchsenius, 2000). 더 나아가 중앙인구등록은 다른 행정체계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덴마크는 행정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기준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다.

덴마크는 1970년까지 전통적 방식으로 센서스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1960년부터 인구관련의 국적 항목과 주택관련의 편의시설 및 주거기간 항목에서 행정자료를 센서스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9년에 중앙인구등록으로 인구통계를 시험적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자료의 오류뿐만 아니라 행정등록을 담당하는 기관과 통계청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1970년에 실시한 센서스 결과와 비교하여, 등록자료를 점검하였으며, 그해 말에는 중앙인구등록자료만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통계를 산출·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해 센서스에서는 건물관련의 주거단위의 수 항목, 경제활동관련의 직업 및 사업체 항목으로 행정자료를 활용

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건물과 주거를 제외한 센서스 항목들에 대하여 행정등록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1978년에는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인 건물/주거등록(Building and Dwelling Register)을 체계화하였다. 그 결과, 1981년에는 세계 최초로 행정자료 기반 센서스를 실시하게 되었다(<표 6> 참조).

<표 6> 덴마크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인구관련	1970	사업체	1960	편의시설
1976	성별	1976	사회경제지위	1960	거주기간
1970 1970	혼인상태	1976	소득		건물관련
-	모국어		교육관련	1981	건축기간
1960	국적	1976	교육정도	-	건축재
-	종교		가구관련	1981	건물의 주용도
	경제관련	1976	가구종류/인원	1970	주거단위 수
1976	경제활동상태	1976	가족종류/인원	-	난방시스템
1976	종사상 지위		주택관련	-	건물의 좌표
1976	산업	-	주택 크기	-	복도면적
1970	직업	1976	방의 수	-	건물의 층수

주 - : 원래 공표하지 않는 항목
출처 : 통계청(200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라.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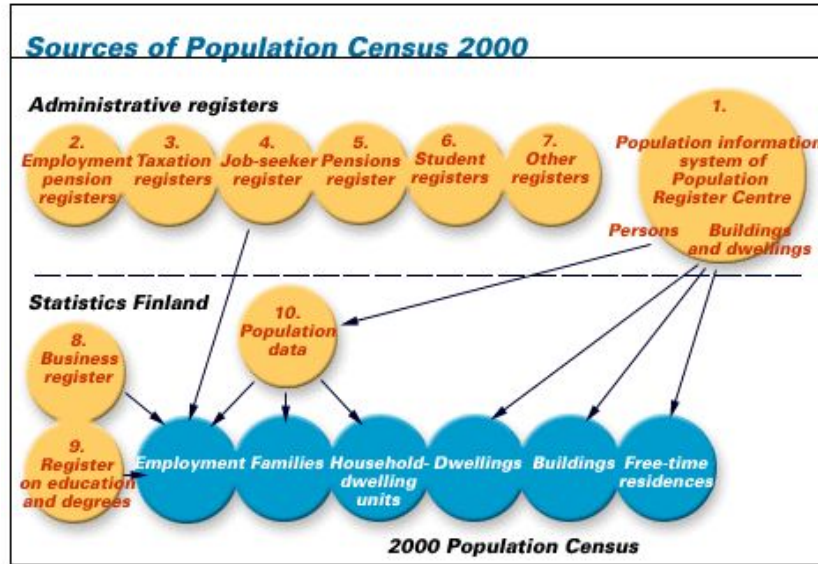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인구센서스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식민지배 기간인 1749년에 스웨덴 정부는 식민통치의 목적으로 최초의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였다. 러시아 식민지배 기간인 1865년에는 통계국이 개설되었고, 1879년에 통계연감이 발간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핀란드 국민에게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1948년에 핀란드 정부는 최초로 국민총소득을 집계하였고, 1990년에는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행정등록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핀란드에서 행정자료가 통계의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 말 중앙인구등록(Central Population Register)이 실행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인별 번호를 주었다. 이후 번호는 납세나 고용연금보험 등과 같은 일반 행정영역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 센서스부터 중앙인구등록과 납세등록의 개인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행정자료의 활용은 계속 확대되었다. 1985년 센서스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들만이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0년에는 총체적인 행정등록 기반의 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핀란드 행정자료기반 센서스는 현재 다음과 같은 구성 체계를 갖고 있다. 핀란드의 인구센서스는 중앙인구등록, 건물/주거등록, 사업체등록, 세금등록, 연금등록 등 여러 종류의 독립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센서스에서는 여러 종류의 행정자료들을 연결하여 필요한 통계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센서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통계는 주로 중앙인구등록자료와 건물/주거등록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행정등록 가운데 중앙인구등록과 건물/주거등록이 가장 기본이 된다. 인구등록자료는 중앙과 지역사무소의 인구등록센터에서 매년 수정하여 통계청으로 보낸다. 이 자료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언어, 국적, 종교, 출생국, 가족관계, 주거 등 행정자료기반 센서스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통계는 센서스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인구등록자료는 다른 자료보다 먼저 1975년 센서스에서 조사를 대체하였다.

건물/주거등록자료 역시 인구등록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건물/주거의 편의시설이나 건축물 등에 변경이 있으면 각 지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사무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1980년 센서스에서 질문지 조사를 바탕으로 건물/주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자료를 검토·수정한 후, 1985년 센서스에서 본격적으로 건물/주거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더 나아가 1987년 이후에는 매년 건물/주거에 관한 통계자료를 만들게 되었다(Harala and Nieminen, 1998).



[그림 3] 핀란드 행정등록 기반 센서스 구성도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 산출은 사업체등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인구등록, 건물/주거등록, 교육등록, 국세등록, 연금보험등록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함께 사용한다. 사업체등록자료는 핀란드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에서 연금자료와 연계하여 개인별 자료를 수집하고, 국세등록에서 소득을, 교육등록에서 교육수준 등을 취합한다. 이렇듯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통계산출절차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는 1990년에야 비로소 행정등록 기반의 센서스로 바뀌었다.

핀란드 행정자료기반 센서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행정자료는 체계적인 주거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스웨덴, 러시아 통치시절을 통해 엄격한 주거등록체계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과 동시에 주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혜택을 통해 주거등록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혜택과 동시에 엄격한 법률적인 제

제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선 주거 등록은 일주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법률적인 제재가 따른다.

둘째,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스를 통해 비용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의 생산은 10배 증가했다. 동시에 비용은 1/4로 감소시켰다.

셋째, 핀란드 통계청에서는 자료유출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대부분 사람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문의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만 자료에 접근한다. 동시에 통합자료는 외부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정보기관을 비롯한 여타 어떠한 국가기관의 접근도 금지되고 있다. 물론 외부 유출 시에도 개인식별 번호를 삭제하는 등 각종 제약을 부가하고 있다.

<표 7> 핀란드의 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연도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시작 연도	항목
	인구관련	1990	사업체	1985	편의시설
1975	성별	1990	사회경제지위	1985	거주기간
1975	혼인상태	1975	소득		건물관련
1975	모국어		교육관련	1985	건축기간
1975	국적	1980	교육정도	1985	건축재
1970	종교		가구관련	1985	건물의 주용도
	경제관련	1975	가구종류/인원	1985	주거단위의 수
1985	경제활동상태	1975	가족종류/인원	1985	난방시스템
1985	중사상 지위		주택관련	1975	건물의 좌표
1990	산업	1985	주택 크기	1985	복도면적
1990	직업	1985	방의 수	1985	건물의 층수

출처 : 통계청(2007),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제4절 국제 항목선정 기준과 조사항목 권고안

1. 유엔(1998년)의 항목선정 기준

유엔(1998)은 센서스의 조사항목을 선정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필요성, 국제비교성, 응답가능성 및 적절성, 재원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조사항목의 시계열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자료의 시계열이 확보될 때 자료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목적에 필요하고 소지역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기준 또는 권고 안에서 정한 조사항목을 선정한다면 다른 나라의 센서스 결과와 비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국제 기준이나 권고안과 다른 항목이나 기준, 분류, 개념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 등을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밝혀 주는 것이 이용자, 특히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조사항목의 선정을 국가목적의 사용에 우선 순위를 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얼마나 빨리 이용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자료원에서 같은 통계를 구할 수 있는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자료라 할 지라도 적기에 자료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항목은 응답자가 기꺼이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기억 자체가 어려워서 응답할 수 없는 조사 항목이 있을 경우 그 조사 항목에 관한 자료만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사항목이 있을 경우 다른 조사 항목의 조사까지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조사 자체를 어렵게 한다.

조사 항목을 많이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조사항목이 너무 많으면 조사원과 응답자의 부담이 늘어나 정확한 정보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표 인쇄, 조사인력의 채용 일수 증가, 자료처리량의 증대 등으로 예산, 자원 등이 더 소요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료처리가 길어져 신속하게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지나

치게 적은 항목을 조사하는 것은 오랜기간동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실시하는 센서스의 결과가 투입보다 지나치게 적어지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항목은 센서스 전 과정의 자원, 필요성 및 신속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수의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유엔 및 ECE/Eurostat 조사항목 권고안

2000년 라운드(1995~2004년) 센서스를 위하여 유엔(1998)이 권고하고 있는 조사항목은 총 74개이다. 이중 39개 항목이 인구에 관한 항목이고, 35개 항목이 가구와 주택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에 관한 항목은 기본항목이 21개, 권고항목이 18개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지리적 및 국내이동특성에 관한항목이 6개(기본항목 6), 가구 및 가족특성에 관한 항목이 1개(기본항목 1), 인구 및 사회적 특성에 관한 항목이 7개(기본항목 4, 권고항목 3), 출산력 및 사망력에 관한 항목이 7개(기본항목 2, 권고항목 5), 교육적 특성에 관한 항목이 4개(기본항목 3, 권고항목 1), 경제적 특성에 관한 항목이 8개(기본항목 5, 권고항목 3), 국제이동에 관한 항목이 3개(권고항목 3), 신체장애에 관한 항목이 3개(권고항목 3)이다. 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본항목이 20개, 권고 항목이 15개로 건물에 관한 항목이 8개(기본항목 3, 권고항목 5), 거처에 관한 항목이 21개(기본항목 14, 권고항목 7), 가구에 관한 항목이 6개(기본항목 3, 권고항목 3)이다. 모든 국가가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국의 필요성,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자국의 사회, 경제, 자연적 상황에 맞게 일부 항목을 변경 또는 대체하여 조사하고 있다.

한편, 유럽지역 기구인 유럽경제 위원회(ECE)와 유럽연합 통계처(Eurostat)가 유럽 국가들을 위해 작성한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 권고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항목과 기본 제표 계획에 관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각 국가가 센서스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29개의 핵심항목(core topics)과 센서스에 포함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52개 비핵심항목(non-core topics)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내용, 분류, 정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 8〉 유엔 권고 2000년 라운드 인구주택센서스 조사항목

구분	구분	항 목
인구 관련 항목	지리적 및 국내이동 특성	기본 상주지, 센서스 시점의 현재지, 출생지, 거주 기간, 전거주지, 과거 특정시점에서의 거주지
	가구 및 가족특성	기본 가구주와의 관계 또는 특정 가구원과의 관계
	인구 및 사회적 특성	기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시민권
		권고 종교, 언어, 국적 및(또는) 인종 그룹
	출산력 및 사망력	기본 총출생아수, 생존아수
		권고 최종출산시기, 지난 1년간 사망아수, 부모생존 유무, 초혼연령·초혼 계속기간, 최초출산시 모 연령
	교육적 특성	기본 읽고쓰는 능력, 재학상태, 최종학력
		권고 전공분야 및 교육상 자격
	경제적 특성	기본 경제활동상태, 취업시간, 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권고 소득, 취업의 제도적 부문, 취업의 장소
국제이동	권고 출생국, 시민권, 입국연도	
신체장애	권고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장애의 원인	
주택 관련 항목	건물	기본 건물종류, 외벽재료, 건축년도
		권고 건물내 주택수, 승강기시설, 농업용건물여부, 건물자재, 수리상태
	거처	기본 소재지, 거처종류, 점유여부, 소유형태, 방수, 연면적, 급수시설, 화장실시설, 목욕시설, 부엌 시설, 조명시설, 쓰레기 처리형태, 거주가구수, 거주자수
		권고 침실수, 취사연료, 난방시설 및 연료, 온수시설, 도시가스시설, 전화, 거처용도
	가구	기본 가구주의 인구경제적 특성(연령, 성, 경제활동상 태, 직업), 점유형태, 임차료 또는 자가 유지비
		권고 자동차수, 내구소비재, 옥외면적

주 : 기본은 기본항목, 권고는 권고항목

출처 : UN,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 1, 1998

<표 9> ECE/Eurostat 권고 인구주택센서스 조사항목

부문	구분	항목	
인구 관 련 항 목	지리적 특성	핵심	상주지, 1년전 상주지
		비핵심	현재지, 농가·비농가 여부, 거주기간, 전(前) 거주지, 이민연도(기간)
	인구학적 특성	핵심	성, 연령, 법적혼인상태, 출생지, 국적
		비핵심	사실혼상태, 부모의 출생지, 국적취득, 인종, 언어, 종교, 생존출생아수, 혼인일자
	경제적 특성	핵심	1주간의 활동상태, 취업시간, 직업, 산업(경제활동단위), 종사상지위, 통근장소
		비핵심	평상활동상태, 무보수사회·개인봉사활동, 실업기간, 부차적직업, 취업부문형태(제도적 단위), 종사사업체의 규모, 주요생계수단, 부양관계, 소득, 통학장소, 통근 교통수단, 통근횟수·소요시간,
	교육적 특성	핵심	최종 학력
		비핵심	학위, 전공분야, 재학상태, 읽고쓰는 능력
	가구·가족 특성	핵심	가구참조자와의 관계
		비핵심	시설가구형태, 시설가구내의 거주자 여부
가구 특성	핵심	임차 형태,	
	비핵심	주택내 단독 또는 동거가구(여부1), 임차료, 내구소비재, 승용차수, 전화	
주택 관 련 항 목	주택·거처의 특성	핵심	거처의 종류, 소유형태, 거처의 위치, 점유형태, 주택내 거주인원, 방수, 부엌, 급수시설, 화장실시설, 목욕시설, 난방형태
		비핵심	빈집형태, 주택내 거주가구수1), 연면적, 취사시설, 온수, 오수처리시설형태, 주난방연료형태, 전기, 도시가스, 건물내 주택위치
	건물의 특성	핵심	건물의 형태, 건축연도
		비핵심	층수, 건물내 주택수, 농장건물여부, 승강기, 건축재료, 수리상태

주 : 1) 가구개념이 생계유지 개념 사용시는 핵심 항목임

출처 : ECE/Eurostat, Recommendations for the 2000 Censuses of Population and Housing in the ECE Region, 1998

제5절 우리나라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 설정

1. 항목 평가방법

인구주택총조사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반면, 행정등록자료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행정적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과 변수들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통제, 수정 및 기타 가공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등록자료는 이용 목적이 상이한 관계로 행정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에 효율적인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조사항목을 평가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엔(1998년)이 권고하고 있는 항목선정 기준은 ① 국가지자체의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④ 항목의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⑤ 국가 재원의 가용성, ⑥ 자료이용의 시의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 목적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기술된 내용 중 ⑤ 재원의 가용성과 ⑥ 자료이용의 시의성 충족이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유럽국가의 선례에서 보듯 행정자료 활용은 기존 조사원에 의한 조사방법보다 크게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자료이용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를 작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전제조건 중의 하나이며, 이 또한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항목 선정을 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① 국가지자체(소지역통계)의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측면에서 통계자료의 중요성(이용우선순위)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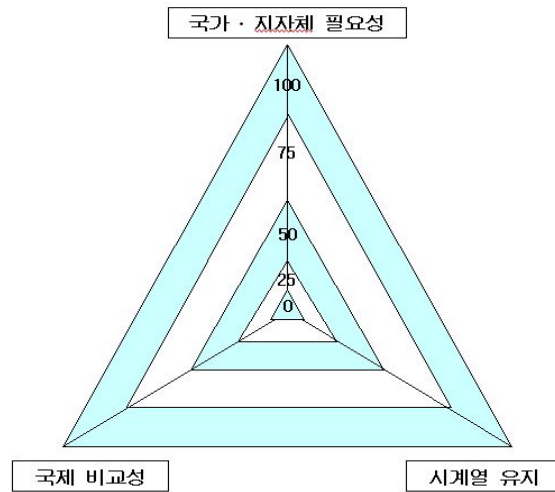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에서는 행정자료의 문제점(또는 한계점)과 활용성을 분석·검토하여 3개 군(群)(완전대체, 불완전대체, 대체불가)으로 구분하여 행정자료로의 대체가능성을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요도(이용우선순위)와 대체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2. 평가 기준

가. 중요도(이용우선순위)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이용우선순위)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고자 ① 국가지자체(소지역통계)의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그림 4] 중요도 평가기준

평가기간은 근대화의 시작시기인 1960년부터 가장 최근 실시된 2005년 까지로 하였다. 3개 부문은 모두 100점 만점으로 총 300점이다.

‘① 국가지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 부여 방법은 전수조사항목이면 100점, 표본조사항목이면 10점 또는 5점(1975년)을 부여하였다. 196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회의 센서스가 실시되었는데 실시연도별로 다른 경우 점수를 합계하여 단순평균하였다. ‘② 국제 비교성’에 대한 점수는 유엔(UN) 50점 만점, ECE/Eurostat 50점 만점으로 총100점이며, ‘③ 시계열 유지’에 대한 점수는 실시 10점, 미실시 0점을 부여하였다.

〈표 10〉 중요도 점수 부여 방법

구 분	① 국가지자체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점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 50점 · 표본 10점 (또는 5점 : 197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UN) - 기본 50점, 권고 25점 · ECE/Eurostat - 핵심 50점, 비핵심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10점 · 미실시 0점

〈표 11〉 중요도 점수 기준표

구 분	평균 점수	① 국가지자체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중 요 도	1차적	100점	100점 (전수)	100점 (기본/핵심)	100점 (전계열)
	2차적	75점 이상	75점 이상 (전수+표본)	75점 이상 (기본+비핵심, or 권고+핵심),	75점 이상 (75% 이상),
	3차적	50점 이상	50점 이상 (전수+표본)	50점 이상 (권고/비핵심)	50점 이상 (50% 이상),
	4차적	49점 이하	49점 이하 (표본)	49점 이하 (해당없음)	49점 이하 (49% 이하),

‘경제활동상태’를 통해 점수산정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상태’는 1970~2005년간 표본조사(단 1985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국가·지자체 필요성’은 $(10+5+10+100+10+10+10+10)/8=20.8$, ‘시계열 유지’는 8회 실시하여 80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상태’의 ‘국제비교성’은 유엔 권고안의 기본항목임으로 50점, ECE/Eurostat 권고안의 핵심항목임으로 50점을 부여하여 100점이다. 따라서 총점은 201점이며, 평균점수는 67점이다.

〈표 12〉 경제활동상태 실시년도별 현황

년 도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전수/표본조사여부			○	○	○	●	○	○	○	○

주 : ● 전수조사, ○ 표본조사

<표 13> 경제활동상태 관련 자료 비교(2006년 12월 기준)

(단위 : 만명)

경제활동인구	국세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만15세 이상 취업자	○ 노출 소득자 (과세자)	○ 만 18~60세 미만 가입자	○ 전국민 의무 가입자2」	○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가입자
2,299	1,759	1,774	4,924	854
○ 대상 세분				
- 임금근로자 1,572 (상용 834) (임시 834) (일용 214)	- 근로소득자 1,259 - 종합소득세1」 458	- 직장 가입자 860 - 지역 가입자 909 (소득신고자 415) (납부예외자 494) (기타 5)	- 직장 가입자 2,845 - 피부양자 1,803 - 지역 가입자 1,896 - 의료급여 183	- 사업장가입자 854
- 비임금근로자 727 (고용주 161) (자영자 436) (무급가족 130)	- 사업소득자 42			
-	80.1%4」	55.5%4」	66.3%4」	54.3%4」

- 주: 1. 종합소득세 신고자 458만 명 취업여부 파악 곤란
 2. 건강보험은 지역·직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대상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취업여부, 산업, 직업, 소득 파악 곤란
 3.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며, 개인별 인적사항 자료 없음.
 4.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1,672만 명) 기준

나. 대체(이용)가능성 평가기준

통계에는 표본조사에 기초한 통계, 센서스에 기초한 통계, 그리고 행정등록에 기초한 통계(statistics based on administrative registers)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본조사나 센서스에 기초한 통계는 조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기초로 작성된 통계인 반면, 행정등록에 기초한 통계는 등록에 기초한 조사(register-based survey)를 사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의미한다. 등록에 기초한 조사는 스스로 자료수집을 하지 않는 통계조사로 대신 기존 행정등록이나 통계등록을 사용하는 조사를 말한다. 여기서 통계등록은 통계적 목적을 위해 가공된 등록을 의미하며 대상 집합(object set), 대상(object), 그리고 변수들(variables)이 통계적 요구에 일치하도록 행정등록을 가공하여 만들어진다. 즉, 통계등록이란 특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행정등록이나 센서스 자료를 가공하여 만든 특정 통계의 원시자료(raw data)를 의미하며 표본조사자료는 통계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자료 대체(이용)가능성은 국제기준 중 ④ 항목의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측면 즉, ‘개념의 일치성’과 ‘포괄범위’에서 분석·검토하여 3개 군(群)(완전대체, 불완전대체, 대체불가)으로 구분하여 행정자료로의 대체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불완전대체군을 다시 보완대체군과 표본대체군으로 분류한 것은 보완대체는 행정자료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시 완전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체군(群)이며, 표본대체는 행정자료 보완이 어려워 표본수준의 자료로서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체군(群)이다.

<표 14> 대체이용가능군 구별

	완전대체군	불완전대체군		대체불가능군
		보완대체	표본대체	
평균점수	100	99~50	49~10	10 미만
개념의 일치정도	100	99~50	49~10	10 미만
포괄범위	100	99~50	49~5	10 미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의 대체(이용)가능성 평가기준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센서스자료와 행정자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과 범위, 조사방법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좁은 의미로는 대체이용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 항목인 인구를 주민등록 행정자료로 가름하여 이용한다는 것은 ‘먼 미래에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 행정자료 비교

	2005 인구총조사	주민등록 행정자료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총조사는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에 관한 제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들 (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 도모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령 제145호 - 지정 조사통계 제10101호(인구총조사) 및 제10102호(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067호(1962년 5월 10일)
조사기준일	- 11월 1일 0시 현재	-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조사대상기간	- 11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42개, - 표본조사 20개, - 시도특성항목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주소이력 등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가구원 - 조사기준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p>※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 취학중인 자 - 외국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 국제연합소속기관 외국직원, 수행원 및 가족 -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 <p>※ 주민등록 대상외의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주민에 의한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 행정자료 모두 우리나라 전체의 성별, 연령별 인구를 포괄한다? 가구와 세대, 사실혼과 법률혼 등 개념과 포괄범위 등이 이해정도에 따라 온도차가 있다? 포괄성과 온도차가 현장조사에 반영되어 실제로 통계수치로 나타난다? 이러한 우문(愚問) 속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개념이나 포괄범위의 상충문제는 통계기법 활용 등을 통해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다른 예를 들면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중 하나인 ‘활동제약’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 활동 제약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조사로 육체적·정신적 장애, 육체적 불편, 질병, 고령에 의한 노환 등에 따른 활동제약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는 반면, 행정정보고통계인 ‘등록장애인현황’의 등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르나, 넓은 의미로는 같다고 보아 등록장애인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표본조사에서 전수화할 수 있다(<표 16> 및 <표 17> 참조).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항목인 ‘활동제약’은 낮은 국제비교성 등으로 이용우선순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조사중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광의(廣義)의 판단은 본 연구가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이라는 적극적 의미에서 행정자료의 미래 완결성을 목표로 접근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입장의 견해와 달리 좁은 의미로 보는 혹자들과 이견이 있음은 명약관하하다.

※ 장애인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표 16>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유형별 인구(5세 이상)

(단위 :: 명)

	전국	동부	읍부	면부
내국인(5세 이상)	44,009,848	35,846,685	3,630,452	4,532,711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 있음	2,438,780	1,544,668	261,055	633,057
시간·청각·언어장애	469,807	296,847	51,080	121,880
육체적 제약(중풍 포함)	1,918,602	1,215,470	207,803	495,329
중풍	182,517	121,210	18,941	42,366
정신적 제약(치매 포함)	419,667	254,643	46,383	118,641
치매	81,228	50,522	7,983	22,723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 없음	41,313,931	34,059,782	3,360,017	3,894,132
육체적·정신적 활동제한 미상	257,137	242,235	9,380	5,522

- 주 : 1) 일반가구 및 집단가구 포함, 특별조사구(군인 등) 및 외국인가구 인구 제외
 2) 활동제한유형은 해당하는 곳 모두에 응답하도록 조사되어(복수응답) 활동제한유형과 ‘활동제한유형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4) 육체적 제약에는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이 포함되고, 정신적 제약에는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이 포함됨

출처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표 17> 등록장애인수

(단위 ::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958	1,134	1,294	1,454	1,611	1,777	1,967	2,105
지체장애	606	682	755	814	883	959	1,049	1,114
시각장애	91	116	136	153	170	168	206	217
청각, 언어	87	106	124	139	155	188	199	218
정신지체	87	95	104	112	119	174	135	143
뇌병변장애	33	65	92	116	143	127	194	215
발달장애	2	3	4	6	8	9	11	12
정신장애	24	33	39	47	54	63	75	82
신장장애	23	28	32	35	38	42	45	48
심장장애	5	7	9	10	12	13	14	14
호흡기장애	-	-	-	7	10	12	13	14
간장애	-	-	-	3	4	5	6	6
안명장애	-	-	-	1	1	1	2	2
장루, 요루장애	-	-	-	7	8	10	10	11
간질장애	-	-	-	3	5	7	8	9

- 주 : 1)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명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제6절 조사항목 평가 결과

1. 중요도(이용우선순위) 평가 결과

① 국가지자체의 필요성, ② 국제 비교성, ③ 시계열 유지 측면에서 평가한 중요도(이용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국가지자체의 필요성, 국제 비교성, 그리고 시계열 유지 3개 측면 모두에서 중요도가 100으로 나타난 1차적 항목은 상주지, 성명, 성별,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졸업여부), 혼인상태(법률혼 관계) 등 7개 이다.

중요도 2차적 항목은 출생지, 혼인상태(사실혼 관계), 취업여부와 거처의 종류, 총방수, 화장실시설, 목욕시설, 점유(소유)관계, 점유형태, 건 축년도, 연건평 등 12개로 나타났다.

이어 중요도 3차적 항목은 문맹여부, 종교, 국적 등 26개, 4차적 항목은 본관, 수학년수 등 55개로 나타났다.

특히 중요도가 4차적인 조사항목인 본관과 남북이산가족은 국제비교성이 없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본관의 경우 가족등록 제도의 시행(2008. 1. 1.)으로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됨에 따라 협의시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호주제와 같은 가족제도에 사회적 요구가 크게 반영되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성씨, 본관별 인구 현황, 집성촌 실태 및 분포, 족보 연구 등과 아울러 신규 성씨와 본관의 발생 현황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산가족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로서 이산가족의 규모와 경제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파악에 필요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출생지 조사항목과 더불어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요도(이용순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 중요도별 항목 현황

구 분	점수	해당 항목 내역
1차적 (7개)	100	[상주지],[성명],[가구주관계],[성별],[연령],[교육정도(졸업여부)],[혼인상태(법률혼관계)] <7개>
	95	-
2차적 (12개)	90	[혼인상태(사실혼관계)],[부업시설],[총방수]
	85	[화장실시설],[주택소유]
	80	[취학여부],[점유형태],[목욕시설],[연건평]
3차적 (26개)	75	[출생지],[거처종류],[건축년도]
	50~74	[문맹여부],[종교],[국적],[1년(5년)전 거주지],[총출생아수],[생존아수],[경제활동상태],[종사상지위],[산업],[직업],[가구구분],[사용방수],[주거(전용)시설],[식수(상수도시설],[취사연료],[난방연료],[난방시설],[대지면적],[거주가능가구수],[동거가구수],[집 및 거주 개수],[지붕재료],[외벽재료],[편의시설],[건물종류]
4차적 (56개))	49 이하	【본관】 , 【남북이산가족】 ,[수학연수],[전공학과],[통근(학)지],[통근시간],[이동교통수단],[초혼연령],[사망자녀수],[동거자녀수],[추가계획자녀수],[지난1년간 출생아수],[취업여부],[구직(활동)여부],[취업가능성],[비구직이유],[주로 한 일],[조금이라도 한 일],[근로장소][주부양자],[취업형태],[취업시간],[취업기간],[추가취업희망],[개인소득],[현직업근무연수],[활동계약],[생활바원천],[자녀거주장소],[생계수단],[주부양자],[거동불편여부],[아동보육],[어머니동거여부],[컴퓨터활용상태],[인터넷활용상태],[개인휴대용통신기기],[단독주택의 종류],[다가구주택],[거주기간],[임차료],[가구심신장애자],[정보통신기기보유],[식수사용형태],[주된 연료],[아궁이형태],[조명시설],[굴뚝상태],[대청마루유무],[식수종류],[가구소득],[자동차보유대수],[주차시설],[주인가구여부],[건물층수],[거주층]

〈표 19〉 조사항목별 중요도 평가 결과

□ 인구항목

항 목	평균 점수	총점	국제비교성		국가· 지자체 필요성	시계열 유지
			유엔	ECE		
기본항목	-	-	-	-	-	-
상주지	100	300	100	50	50	100
성명	100	300	100	50	50	100
본관	40	120	-	-	-	100
가구주와의 관계	100	300	100	50	50	100
성별	100	300	100	50	50	100
연령(생년월일)	100	300	100	50	50	100
교육정도	-	-	-	-	-	-
- 졸업여부	100	300	100	50	50	100
- 취학여부	83	250	50	25	25	100
- 수학연수	37	110	-	-	-	100
- 전공학과	23	70	50	25	25	10
- 문맹여부	67	200	75	50	25	100
혼인상태	100(법률) 92(사실)	300(법률) 275(사실)	50(법률) 25(사실)	50	50(법률) 25(사실)	100
종교	60	180	50	25	25	100
국적	62	182	100	50	50	100
남북이산가족	37	110	-	-	-	100
인구이동	-	-	-	-	-	-
출생지	77	187	100	50	50	61
전 거주지	-	-	-	-	-	-
- 1년전 거주지	58	173	100	50	50	33
- 5년전 거주지	58	173	75	50	25	18
통근(학) 여부	-	-	-	-	-	-
통근(학)지	37(통근) 28(통학)	110(통근) 85(통학)	50(통근) 25(통학)	-	50(통근) 25(통학)	20
통근(학) 시간	33	98	25	-	25	33
이동교통수단	34	103	25	-	25	28

42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항 목	평균 접수	총접	국제비교성			국가· 지자체 필요성	세계열 유지
			유엔	ECE			
출산력	-	-	-	-	-	-	-
초혼연령	37	110	50	25	25	10	40
총출생아수	54	162	50	50	-	32	80
- 사망자녀수	34	102	25	25	-	27	50
- 동거자녀수	10	30	-	-	-	10	20
- 별거자녀수	10	30	-	-	-	10	20
생존아수	50	150	75	50	25	55	20
추가계획자녀수	7	20	-	-	-	10	10
*자녀년간 출생아수	7	20	-	-	-	10	10
경제활동	-	-	-	-	-	-	-
경제활동상태	67	201	100	50	50	21	80
- 취업여부	31	93	-	-	-	23	70
- 구직(활동)여부	10	30	-	-	-	10	20
- 취업가능성	37	110	-	-	-	100	10
비구직이유	37	110	-	-	-	100	10
주로 한 일	37	110	-	-	-	100	10
조금이라도 한 일	37	110	-	-	-	100	10
근로장소	15	45	25	25	-	10	10
취업형태	9	28	-	-	-	8	20
취업시간	38	115	100	50	50	5	10
취업기간(개월)	7	20	-	-	-	10	10
추가취업희망	5	15	-	-	-	5	10
중사상의 지위	70	209	100	50	50	19	90
산업	73	219	100	50	50	19	100
직업	70	210	100	50	50	10	100
개인소득	12	35	50	25	25	5	10
현직업근무년수	7	20	-	-	-	10	10
활동제약 등	-	-	-	-	-	-	-
활동제약	33	100	25	25	-	55	20
생활비원천 ^{주1)}	7	20	-	-	-	10	10
자녀거주장소 ^{주1)}	15	45	25	25	-	10	10
생계수단 ¹⁾	15	45	-	25	-	10	10
주부양자 ^{주1)}	15	45	25	25	-	10	10
거동불편여부 ¹⁾	15	45	25	25	-	10	10
아동교육	7	20	-	-	-	10	10
- 어머니동거여부	7	20	-	-	-	10	10
컴퓨터활용상태	7	20	-	-	-	10	10
인터넷활용상태	7	20	-	-	-	10	10
개인휴대용통신기	7	20	-	-	-	10	10

□ 가구항목

항 목	평균 점수	총점	국제비교성		국가· 지자체 필요성	시계열 유지	
			유엔	ECE			
가구	-	-	-	-	-	-	
거처의 종류	77	230	50	-	50	100	80
- 단독주택 종류	45	135	25	-	25	100	10
가구구분	53	160	-	-	-	100	60
점유형태	80	240	100	50	50	100	40
거주기간	49	148	75	50	25	33	40
임차료	48	143	75	50	25	28	50
사용방수	57	170	-	-	-	100	70
점유(소유)관계	87	260	100	50	50	100	60
가구 심신장애자	37	110	-	-	-	100	10
문화시설 및 가재	44	132	-	-	-	82	50
정보통신기기보유	7	20	-	-	-	10	10
주거(전용)시설	57	170	-	-	-	100	70
- 부엌시설	90	270	-	50	50	100	70
- 화장실시설	89	268	100	50	50	88	80
- 목욕시설	80	240	100	50	50	100	40
- 식수(상수도)시설	71	213	100	50	50	63	50
- 식수사용형태	7	20	-	-	-	10	10
주된 연료	7	20	-	-	-	10	10
취사연료	54	163	50	25	25	63	50
난방연료	53	160	50	25	25	100	10
난방시설	64	193	75	25	50	78	40
아궁이형태	37	110	-	-	-	100	10
조명시설	37	110	50	50	-	50	10
굴뚝상태	37	110	-	-	-	100	10
대청마루유무/평수	37	110	-	-	-	100	10
식수종류(이용식수원)	37	110	-	-	-	100	30
가구소득	7	20	-	-	-	10	10
자동차보유대수	27	80	50	25	25	10	20
주차시;설	10	30	-	-	-	10	20
주인가구여부	25	75	-	-	-	55	20
거주층	7	20	-	-	-	10	10

44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 주택항목

항 목	평균 점수	총점	국제비교성			국가· 지자체 필요성	시계열 유지
			유엔	ECE			
주택	-	-	-	-	-	-	-
거처의 종류	77	230	50	50	-	100	80
건물층수	37	110	-	-	-	100	10
대지면적	58	175	25	25	-	100	50
연건평	82	245	75	50	25	100	70
거주자능가구수	57	170	50	50	-	100	20
총방수	93	280	100	50	50	100	80
동거가구수	50	150	-	-	-	100	50
건축년도	77	230	50	-	50	100	80
건물수신상태	45	135	25	25	-	100	10
다가구주택	37	110	-	-	-	100	10
집/거주의 개수	53	160	50	25	25	100	10
건물내 입주여부	37	110	-	-	-	100	10
지붕재료	54	163	50	25	25	63	50
외벽재료	54	163	50	25	25	63	50
편의시설 (부엌, 화장실 등)	67	200	50	50	-	100	50
* 주권 난방시설	37	110	-	-	-	100	10
주택용도	7	20	-	-	-	10	10
건물의 종류	60	180	-	-	50	100	30

2. 대체이용가능정도 평가 결과

행정자료 대체(이용)가능성은 국제기준 중 ④ 항목의 응답 가능성 및 적절성 측면 즉, ‘개념의 일치성과 ‘포괄범위’에서 평가하였다.

전수조사 항목으로서 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은 가구구분, 가구주관계, 국적, 거주종류, 건물종류, 건축년도, 대지면적, 본관, 상주지, 성명, 성별, 연건평, 연령, 주택소유, 출생지, 혼인상태(법률혼 관계) 등 16개 항목이었으며, 불완전대체이용가능항목은 교육정도, 난방시설, 남북이산가족, 목욕시설, 부엌시설, 점유형태주거용 연면적, 총방수, 편의시설, 화장실시설, 취학여부, 주거시설, 혼인상태(사실혼 관계) 등 1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방수와 종교는 관련 행정자료가 없어 대체할 수 없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항목의 경우 다른 표본조사 자료를 가지고 대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행정등록에 기초한 통계는 등록에 기초한 조사를 사용하여 생산된 통계를 의미하며, 표본조사자료는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항목 중 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은 전거주지, 거주기간, 건물층수, 동거가구수, 동거자녀수, 별거자녀수, 사망자녀수, 생존아수, 출생아수, 초혼연령, 활동제약 등 15개 항목이며, 전수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은 가구소득, 개인소득, 거주층, 경제활동상태, 근로장소, 아동보육, 식수시설 및 사용형태, 직업, 생활비원천, 주차시설 등 2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행정자료의 부족으로 대체하여 이용할 수 없는 항목은 구직활동여부, 추가계획자녀수, 추가취업희망, 개인휴대용통신기기보유, 인터넷이용상태, 컴퓨터활용상태 등 1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대체이용가능정도별 항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세부 평가결과는 <부록> ‘항목별 대체(이용) 가능성 평가 결과’ 참조)

<표 20> 대체정도별 항목 현황

구 분	전수조사항목	표본조사 항목
100 <31개>	[가구구분],[가구주관계],[국적],[거처종류-단독주택,다가구주택],[건물종류-주택용도],[건축년도],[대지면적],[본관],[상주지],[성명][성별],[연건평],[연령],[주택소유],[출생지],[혼인상태(법률적 관계)] <16개>	[1년(5년)전거주지],[거주기간],[건물층수],[동거가구수],[동거자녀수],[별거자녀수],[사망자녀수],[생존아수],[전거주지],[지난1년간출생아수],[초혼년령],[활동제한-거동불편여부,가구내심신장애자],[총출생아수],[자녀거주장소],[어머니동거여부] <15개>
50~99 <38개>	[교육정도(졸업여부)],[난방시설],[남북이산가족],[목욕시설],[부엌시설],[점유형태],[주거용면적],[주인가구],[총방수],[편의시설],[화장실시설],[혼인상태(사실적관계)],[취학여부],[주거(전용)시설] <14개>	[가구소득],[개인소득],[거주층],[경제활동상태],[근로장소],[식수종류],[식수(상수도)시설],[이동보육],[산업],[자동차보유대수],[종사상지위],[주로 한 일],[직업],[취업여부],[현직업근무년수],[취업형태],[취업기간],[주된 연료-취사연료],[난방연료],[아궁이형태],[조명시설],[지붕재료],[외벽재료] <24개>
10~49 <3개>		[생활비원천-생계수단],[점유형태],[주차시설] <3개>
10미만 <20개>	[사용방수],[종교] <2개>	[구직활동여부],[수학연수],[문맹여부],[주부양자],[추가계획자녀수],[추가취업희망],[개인휴대용통신기기],[인터넷활용상태],[컴퓨터활용상태],[대청마루],[거주가능가구수],[건물수선상태],[입차료],[굴뚝상태],[이동교통수단],[전공학과],[주차시설],[통근통학여부],[통근(학)지],[통근(학)시간] <18개>

3. 종합 평가

가. 중요도별 대체정도별 분류

중요도별 대체이용가능정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요도와 대체이용가능정도가 50점 이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인구 및 가구부문>에서는 가구와의 관계, 상주지, 성명, 성별, 연령, 혼인상태(법률혼 관계), 출생지, 국적이 완전대체하여 이용가능한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정도와 ECE/Eurostat가 비핵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혼인상태(사실혼 관계)는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비교성 때문에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본관과 남북이산가족 중 본관은 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남북이산가족은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에서는 거처의 종류, 주택용도, 주택의 소유여부, 건축년도, 건물의 종류, 연건평, 대지면적 등이 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난 반면, 점유형태, 총방수, 부엌시설, 목욕시설, 화장실시설, 난방시설, 주거시설 등 편의시설과 주거연면적 등은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가능 행정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가구부문> 중 상주지, 성명, 성별, 연령은 주민등록 행정자료, 혼인상태·본적은 가족등록 행정자료, 교육정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 남북이산가족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를 각각 활용할 수 있다.

<주택부문>은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 중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언급한 조사항목외에 많은 조사항목이 주민등록 행정자료와 건축물대장과 관련성이 매우 깊어 반드시 이들 행정자료를 기본등록자료로 하여 가족등록 행정자료, 4대 보험자료, 자동차등록 행정자료 등과 연계모형을 생성하여 활용성 증대를 모색하여야 한다.

<표 21> 중요도별 대체정도별 현황

<중요도>

100		교육정도	● 가구주관계, 상주지, 성별, 성명, 연령, 거처(주택)종류, 주택용도, 혼인상태(법률적관계)	
90		● 부업시설, 총방수, 혼인상태(사실적관계)		
80		● 목욕시설, 점유형태, 취학여부, 화장실시설	● 연건평, 주택소유	
75			● 건축년도, 출생지,	
50	● 사용방수,종교 / ○ 거주가능가구수, 문맹여부,	● 난방시설, 주거시설, 주거연면적, 편의시설 / ○ 경제활동상태, 난방연료, 산업, 생존아수, 식수시설, 외벽재료, 종사상지위, 지방재료, 직업, 취사연료	● 건물종류, 국적, 대지면적 / ○ 1년(5년)전거주지, 동거가구수, 동거자녀수, 전거주지, 총출생아수,	
49 이하	○ 개인휴대용통신기기, 건물수선상태, 구직활동, 굴뚝상태, 대청마루, 문화시설및 자재, 비구직이유, 수학여부, 아궁이형태, 인터넷이용실태, 입차료, 전공학과, 정보통신기기보유, 조금이라도 한 일, 주부양자, 추가계획자녀수, 추가취업희망, 취업가능성, 컴퓨터사용여부, 이동교통수단, 통근(학)여부, 통근(학)소요시간,	○ 생활비원천, 주된 연료, 주차시설	● 【남북아산가족】, 주인가구 / ○ 가구소득, 개인소득, 거주층, 근로장소, 식수사용형태, 아동보육, 자동차보유, 조명시설, 주로 한 일, 취업기간, 취업여부, 취업형태, 현직근무년수, ● 【본관】 / ○ 활동계약, 거주기간, 건물층수, 별거자녀수, 사망자녀수, 어머니동거여부, 자녀거주장소, 지난1년간출생아수, 초혼연령,	
	10 미만	10-49	50-99	100 <대체정도>

주: ● 전수조사 항목, ○ 표본조사 항목

나. 주요 행정자료 활용성 검토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는 ① 등록자료의 직접적 사용, ② 등록 추정, ③ 등록에 기초한 구조통계, 변경통계, 결합통계, ④ 유량통계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번째, 등록자료의 직접적 사용은 자료의 연결이나 추론의 도출없이 단지 등록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통계로 인구의 성별 및 연령구조에 대한 통계, 인구변화에 대한 통계, 기업통계, 소득 및 자산통계, 교육통계, 범죄통계, 건물 및 주거통계 등이 있다. 두 번째, 등록 추정은 모델이나 의사결정의 최적그룹을 세우는데 동시에 등록에 기초한 많은 조사표 자료의 사용을 포함하며, 전체적인 자료의 관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출처의 선정에 고려하여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른 데이터셀 으로부터 이용한다. 개인고용자료가 고용연금시스템, 세금등록 및 개인 또는 고용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이용된다. 세 번째, 등록에 기초한 구조통계, 변경통계, 및 결합통계는 지역 내 인구와 연령구조, 기업의 수와 속성, 자동차의 크기와 연령구조를 설명하는 구조통계, 출생·사망·이동·결혼·이혼에 대한 변경통계, 다른 등록출처로부터 자료를 결합하여 생산되는 결합통계, 거주자에 대한 자료와 함께 건물 및 주거 재고의 연결로 생산되는 주택현황통계 등이 있다. 네 번째, 유량통계는 어떤 것에 대한 자료와 동일 개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단위들로 이어질 목적으로 매년 함께 연결되는 통계로 교육으로부터 근로활동으로 이동을 설명하는 직업통계, 지난해 동안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업의 수와 기업의 출현과 폐쇄, 소유주의 변경, 산업분류의 변경 등에 대한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 기업등록통계, 주어진 이전 시점에 실업자수와 구조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훈련과 직업소개 기간 및 실업기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직등록통계, 그 나라 내의 자동차 재고량 및 그 해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등록통계 등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 중 주요하게 활용되는 주민등록 행정자료와 가족등록 행정자료, 그리고 건축관련 행정자료 등을 통해 조사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민등록 행정자료

행정등록자료 가운데 주민등록 행정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고, 196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주민등록은 등록자료를 기초로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상시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①).

연혁을 살펴보면 1942년 기류수속규칙이 조선총독부령 제235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선 신분등록제도인 호적제도와 거주자등록제도인 기류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다. 기류제도는 주소지 이외에 기류지를 따로 인정함으로써 실제 주소지와 기류지가 상이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기류법을 폐지하고 신분증명서인 시·도민증을 발급하였다. 196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신고와 현거주지에서의 일제 경신으로 본격 시행되었다.

주민등록 행정자료의 조사대상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제6조)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 대상외의 자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대상외의 자>

- ① 외국인
- ②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또한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기간은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신고한 기준으로 작성된다

신고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본적(없는 경우 사유), 주소, 국적명, 전입전의 주소 및 년월일, 특수기술 등이다(제10조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번호로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거주와 거주이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출생과 사망신고, 혼인 및 이혼 신고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미 주민등록 행정 자료는 지역별, 연령별 인구동태나 인구이동 작성에 활용되고 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구조, 분포의 변화를 파악하는 인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등록자료의 전산화는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각종자료들을 집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나이, 구성원 관계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번호체계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어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그후 1975년 7월 25일 부터 현행 13자리로 일체 경신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며, 뒤의 7자리 중 첫번째는 성별을 나타낸다.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경우 1, 여자는 2였는데, 21세기가 되면서 남자는 3, 여자는 4라는 숫자가 부여되었다. 그 다음의 4자리는 출생지역의 조합번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 해당 지역의 같은 성씨 중에서 출생 신고한 순서를 나타낸다. 마지막 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오류검증 번호이다.

〈표 22〉 주민등록번호체계

구분	출생			성별	출생지역	추가번호	점검번호	계
	년	월	일					
자릿수	2	2	2	2	4	1	1	13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구주소와 새주소가 있다. 구주소의 경우 18 자리이고 새주소는 27자리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는 구주소로 다시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법정동은 주민등록 행정자료의 주소로서 법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장부에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의 인구규모, 도로, 하천, 능선 등을 기준으로 권역 구분한 것으로 그 이후 우리 사회의 인구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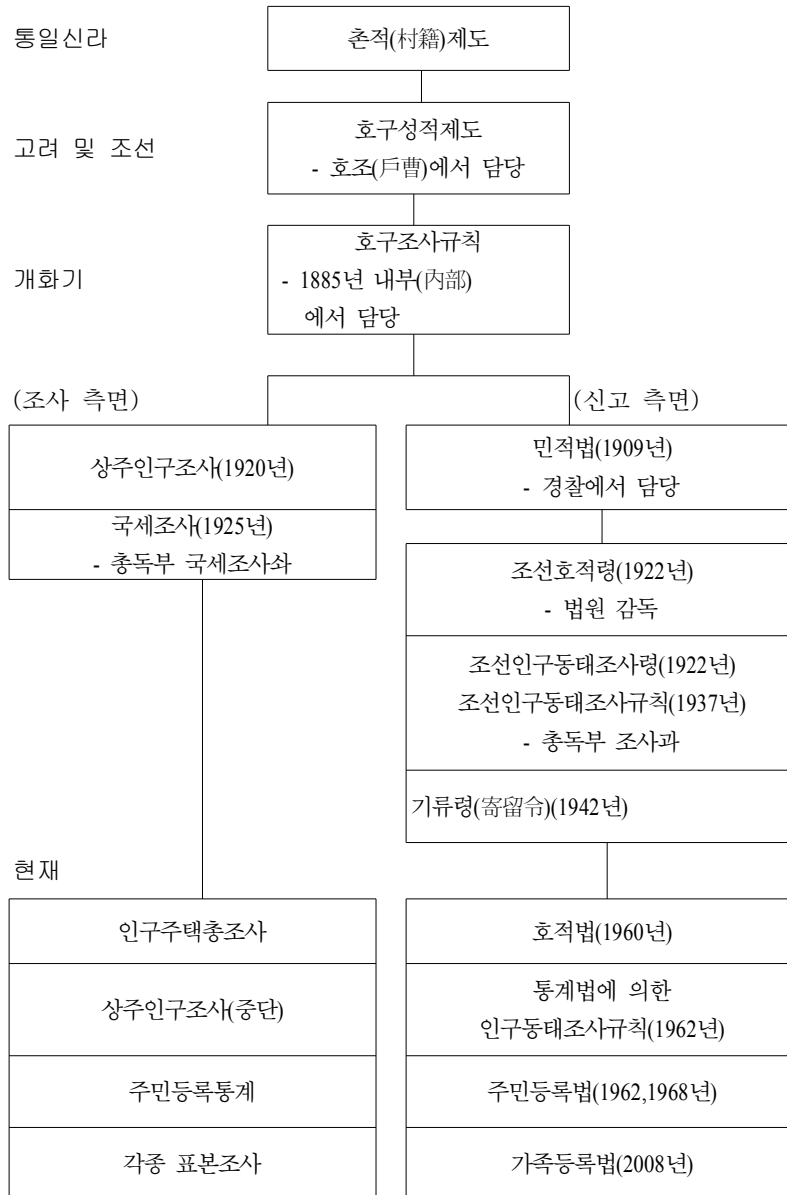
시의 변화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동은 인구총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로 행정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 이후 도시의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를 위해 법정동을 여러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23〉 구주소와 새주소체계

구주소	내역	법정동	본번	부분	계
	자릿수	10	4	4	18
새주소	내역	법정동	도로	건물번호	계
	자릿수	10	9	8	27

구주소는 일제시대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토지조사사업은 지적법에 기초를 두고 각 필지에 대해 지적도상에서 경계선을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하였다. 이 주소체계는 토지의 소유가 중요했던 농업사회에서 토지 중심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행정적으로 필지에 대한 자료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건물에 대한 자료는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게 된다.

새주소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07년 4월5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기존 주소와 같이 사용한다. 200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안'에 따르면 새주소는 모든 도로나 길, 골목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줘서 이를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건물중심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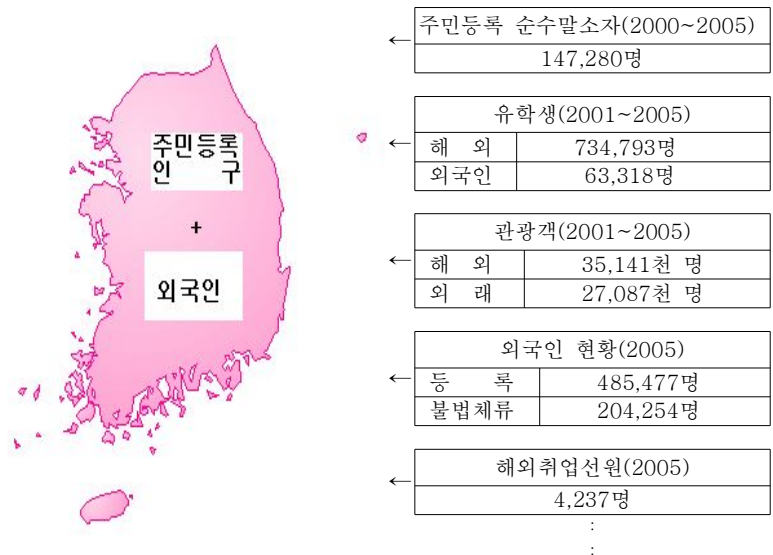


[그림 5] 호구조사제도의 시대별 흐름

가) 상주지

(1) 거주기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대상은 시간, 지역, 속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되는 개인이다. 총조사인구는 현주인구와 상주인구로 분류된다. 현주인구는 총조사 당시에 응답자가 있었던 지역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상주인구는 응답자가 총조사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살고 있는 상주인구를 조사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해외취업, 취학중인 자, 외국외교관, 수행원, 공무로 체류중인 외국인 및 그 가족, 국제연합 소속기관 외국직원, 수행원 및 가족, 국내 주둔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등이다. 반면에 주민등록 행정자료는 법에 의거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등록 행정자료에서 제외되는 자는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이다.



[그림 6] 총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관계

주민등록 행정자료는 해외체류자인 경우 실제 조사기간에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상주개념의 이구는 주민등록인구에서 법무부의 출입국현황과 국토해양부의 국적선원취업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조사장소와 신고장소

인구주택총조사는 기결수와 보호소년을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와 위탁소년을 자기집(위탁가정)에서 조사한다. 현역군인의 경우 영내생활자는 군대내, 영외거주자나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등은 자기집에서 조사한다. 반면에 주민등록 행정자료는 군인, 교도소, 전투경찰 등 특별조사구내 인구 모두를 신고 등록된 장소로 기재한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특별조사구내 인구도 신고장소(주거부정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주민등록지)에서 재집계됨으로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 행정자료와 동일하다.

다만 아파트 분양, 불량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토지매매 등 부동산과 의료보험, 가족수당 등 경제적 이익 목적이나, 시승격, 학군배정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달리 등록지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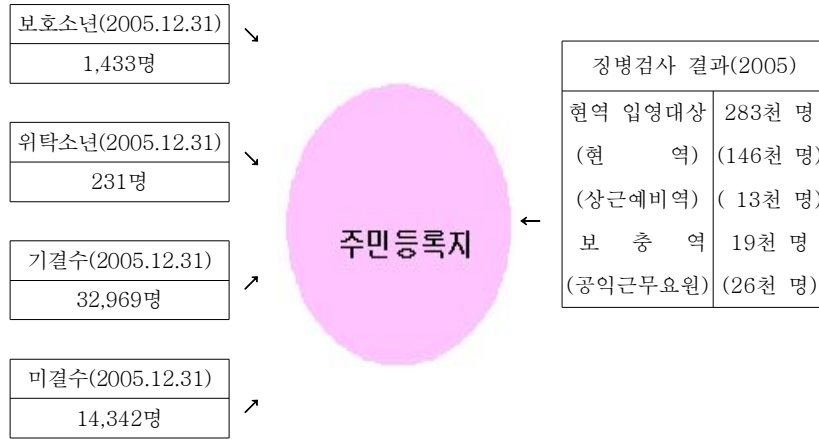
따라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등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외에 사업장 자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료(진료장소) 등을 연계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주민등록 말소자

부동산과 교육관련 위장전출입 외에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순수 주민등록 말소자²⁾가 적지 않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무연고자, 일용직 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들로 주민등록 말소자는 2000년 이후 총 151만6,852명이다. 이중 채무상환 등을 위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136만9,572명을 제외한 순수 주민등록 말소자는 14만7,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말소자 자료에 Imputation기법 등을 활용하여 총인구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그림 7] 조사장소와 신고장소

나) 성명·성별

<성명>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대상을 확인하고, 조사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항목으로 조사자료의 개인비밀보호차원에서 coding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향후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시 부족한 자료보완을 위해 기존에 조사되었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DB화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바, 개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대체키(pin-number)를 개발하여야 한다.

<성별>은 남녀간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항목이다. 생물학적이며, 행위중심의 성인 sex와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으로 가치나 신념을 내포하는 gender 표기에 이견이 있으나 이 또한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연령

<연령>은 학령인구, 병역인구, 생산연령인구, 가임여성인구, 고령인구 등인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20-30대는 경제활동, 0-4세는 동반가족, 70세 이상은 고령으로 타지에 부정기 거주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따라 중복, 누락 등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 행정자료간의 연령 차이의 첫 번째 요인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세는 나이(만 나이) 기준이나 주민등록 행정자료는 신고 기준이다. 즉,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기준일이 11월 1일 0시 현재인 반면, 주민등록 행정자료의 조사기준일은 본인이나 세대주가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두 번째 요인은 동일인인 경우도 띠 간격에 의한 기억 착오, 양음력 선호, 다산다사(多産多死)형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형 인구구조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또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정도는 응답자의 연령대와 시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1999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센서스 제3차(도시지역) 및 제4차(농촌지역) 시험조사에서 주민등록의 만연령과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은 90.9%, 농촌지역은 87.3%가 일치하였으며, 1997년에 실시한 상주지와 주민등록지 비교연구 결과에서는 1959년 이전 출생자의 62.2%, 1980년생 이후 출생자의 93.5%, 1990년 이후 출생자의 97.7%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간의 차이를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에 병기된 실제생년월일 등을 활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가족등록 행정자료

가족등록부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가(家) 단위의 호주제가 폐지(2007.4.27.)됨에 따라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2007.5.27. 법률 제8435호)이 제정되어 2008. 1. 1.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진다. 따라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④항)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이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둘째,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이다.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은 본적이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셋째, 성(姓)변경 제도의 시행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6항)

넷째, 친양자 제도 시행이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이 제도는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 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과양만 인정된다.

〈표 24〉 친양자입양과 입양의 차이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 의	재 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 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 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 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가 모두 소멸됨

가족관계등록 행정자료 이용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표시된다.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기존의 성·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법적 신뢰관계를 혼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규정의 입법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다.

<표 25> 가족관계등록 행정자료 주요 기재사항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본 · 출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 · 입양 여부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가) 본관

<본관>은 가족등록 제도의 시행(2008. 1. 1.)으로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됨에 따라 협의시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7월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녀 성 변경 제도’가 시행된 상반기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2천349건이 접수되어 9천 226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8천328건은 인용, 310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3천123건은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호주제와 같은 가족제도에 사회적 요구가 크게 반영되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성씨, 본관별 인구 현황, 집성촌 실태 및 분포, 족보 연구 등과 아울러 신규 성씨와 본관의 발생 현황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부와 가족등록부 등 일부 행정자료간에 상이한 경우가 있으나 주민등록부와 가족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다.

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족구조, 가족유형 및 가족생애주기 등을 파악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家口)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이며,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가족등록부와 주민등록상의 세대(世帶)는 동일 거처에 생활하는 것으로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관계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세대간의 관계를 일컫는다.

또다른 의미의 세대(世代)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아이가 성장하여 부모의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약 15~30년간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상의 가구와 가족등록수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실질적인 대표자의 정의에는 호주, 세대주와 같이 법적이며 규범적인 의미가 이미 강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구와 세대의 구분 보다는 오히려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인 가족(家族)과의 차이점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제로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현실생활에서는 가족과 가구의 구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가구의 구성은 1인으로도 가능하나 가족은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둘째, 가족원만으로 구성되어 가족과 일치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가족원과 비가족원으로 구성되어 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가구도 가능하다. 셋째, 하나의 가족이 2개 혹은 그 이상의 가구를 형성할 수가 있다³⁾.

친족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공동생활관계 여부와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은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3) 통계청, 2006, 인구대사전, p7 재인용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005년 개정된 가족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리고 배우자이다.

가구 내에서 부부의 권위와 책임이 동등하고, 가구 또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구주 또는 가구의 대표자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호주에서는 1986년 센서스부터 가구주 또는 대표자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Person 1, Person2,Person n으로 조사하는데 구성원간의 관계는 Person 1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정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Person 1에 대한 관계를 질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 센서스까지는 가구주 개념을 이용하였으나 1980년부터는 가구의 대표자(householder)를 정하고 나머지 구성원과의 관계를 질문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유럽국가들에 대한 2000년 인구센서스 권고안에서 과거에 사용하였던 가구주는 가구의 참고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가구내의 최연장자나 소득면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도 가족관계의 분석을 위해 가구참고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⁴⁾ 주민등록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구와 세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등록 및 가족등록 행정자료와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를 함께 연계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한국인구학회, 2003,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연구, pp34-35

1. 가구원에 관한 사항

항목별 작성 예	성명 성별
홍길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input type="checkbox"/>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6 1960년 9월 15일 ③ 양력 ④ 음력	이 가구에서 살고 있는 분의 성명 (이름과 생일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와 같은 나이로 몇 살입니까? - 함께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기재하십니까?

주변등록표 (등본)

세대주 성명(한자)	세대 구성 시유 및 일가
연호 유 소 (중·년)	전입일/전입일 변동 사유
현주소 읍 동 리 가 호	
현주소 읍 동 리 가 호	
세대주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사유

가구주와의 관계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 가구주와 같은 나이로 몇 살입니까?
 - 함께 생년월일은 양력 또는 음력으로 기재하십니까?
 -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 없이 가구원 인정되므로

① 가구주 ② 가구주와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와 부모 ⑥ 배우자와 부모 ⑦ 조부모 ⑧ 배우자와 조부모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상세 내용
성별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년 월 일
국적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국적 회복	[작성사유] [작성일자]
계별	[작성사유] [작성일자]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그림 8] 가구주와의 관계

다)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된다. 혼인상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사실적 관계(15세 이상)인 반면 주민등록 및 가족등록 행정자료는 법률적 관계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실혼(事實婚)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혹은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혼외동거는 혼인의사 없이 남녀가 혼인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동거현상을 지칭하며,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결합이라는 점이 사실혼과 다르다. 따라서 실지조사 과정에서 혼인상태 항목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응답이 거부되거나 부정확하게 응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ECE/Eurostat는 법률혼관계를 핵심조사 항목으로, 사실혼관계를 비핵심조사 항목으로 권고하고 있다.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는 주민등록 및 가족등록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라) 출생지·남북이산가족·국적

<출생지>는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률을, <남북이산가족>은 이산가족의 규모와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국적>은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출생지>가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조사가 됨으로써 출생 당시의 특성 반영이 어렵다. 실제지와 등록지가 다를 수 있으나 주민등록 및 가족등록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대체가 가능하다. <남북이산가족>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나 호적등록 행정자료의 원적(原籍), 가족등록 행정자료의 출생지, 남북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 새터민입국현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적>은 가족등록부와 재외동포관련 행정자료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외국인 관련 행정자료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여기서 외국인은 동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관리사항은 국민의 출국(제3조), 국민의 입국(제6조), 외국인의 입국(제7조), 외국인의 상륙(제14조~제16조의 2)과 산업연수생, 외국인유학생 등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17조~제30조)이다.

동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 제2조에서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2년이다(제10조).

외국인 관련 행정자료에는 여권, 출입국신고서, 등록외국인기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서가 있으며, 이를 입력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시스템이 시군구에 있다. 또한 재외동포관련 행정자료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가 있다.

66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을 위한 항목선정

중국의 국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료>			
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② 주민등록번호 (자치구인 외국국적동포)	
③ 영자성명(대한인 한글표기) 한자성명			
④ 성별 남 M 여 F	⑤ 생년월일	⑥ 국적	⑦ 직업
⑧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⑨ 직업	
⑩ 출생국명 (별외거주국)		⑪ 전학번호	
⑫ 대한민국 내 거주지 (국내거소)	행정동 코드	신리지	번지
⑬ 대한민국 내 거주 가족사항(원계만: 배우자 1. 부모 2. 자녀 3. 기타 9)		분류	종류
원계		성명	성별
⑭ 거주지소재지(구분만: 사동발급 또는 자격부여 1. 자격별정 2. 체류기간연장 3. 갱신 4. 출국기한연장 5. 기타 9) *군부처지정시에는 허가번호가 없습니다.		구분	체류자격
⑮ 군부처사항(구분만: 군부처지정 1. 별정 2. 군부처우가 3. 자격 외 활동 4. 기타 9)		구분	군부처지정
⑯ 지입허가사항(구분만: 안수 S, 복수 M, 지입국가연결 B)		구분	안수
⑰ 주요종류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만: 출생 1. 입국 2. 등록자격변경 3. 외국국적취득 4. 등록연계 5. 출국 6. 사망 7. 한국국적취득 8. 국민취우 9. 기타 0)		구분	일자
*외국출생: 출생국명, 리필명, 지외동포의 출생국과 필적지위에 관한 필명에 따릅니다.			

체류지변경신고서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성 Family name	漢子	성별 SEX	남 M 여 F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전체주소 Former Address		신주소 New Address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등록자 Dependents in Korea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관계 Relation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비고 Remark		
신고일 Date of Report		신고자 성명 Signature of applicant	
위와 같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report on alteration of residence has made as above.			
년 월 일 Date			
대견광역시 서구청장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개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①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영자성명		한자성명	
③ 성별 남 M 여 F	④ 생년월일	⑤ 영권사항 번호	발급일
⑥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⑦ 직업	⑧ 전화번호
⑨ 출생국명	⑩ 거주국명	⑪ 특이사항	⑫ 마이크로필름번호
⑬ 국내거소 도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 거소신고일 특별(광역시)시 구 동 번지			
⑭ 주요종류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만: 입국 2. 외국국적취득 4. 출국 6. 사망 7. 기타 0)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⑮ 별첨사항(지외동포의 출생국과 필적지위에 관한 원본 또는 다른 필본 위변사항) 별첨 처벌 조치 조치 조치 처벌 처벌 조치 조치 조치 내용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근거 내용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근거			
⑯ 자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지불금납입사항 및 달 소원 주민등록번호)			

① 국내거소신고번호			
② 영자성명		한자성명	
③ 성별 남 M 여 F	④ 생년월일	⑤ 국적	⑥ 국적취득일자
⑦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⑧ 직업	⑨ 전화번호
⑩ 출생국명	⑪ 특이사항	⑫ 마이크로필름번호	
⑬ 국내거소 도시, 군, 읍, 면, 동, 리, 번지 거소신고일 특별(광역시)시 구 동 번지			
⑭ 체류자격사항(구분만: 사동발급 또는 자격부여 1. 자격별정 2. 체류기간연장 3. 출국기한연장 4. 기타 9) 구분 체류자격 안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안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⑮ 주요종류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만: 출생 1. 입국 2. 자격별정 3. 외국국적취득 4. 출국 6. 사망 7. 한국국적취득 8. 국민취우 9. 기타 0)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구분 일자			
⑯ 별첨사항(지외동포의 출생국과 필적지위에 관한 원본 또는 다른 필본 위변사항) 별첨 처벌 처벌 조치 조치 조치 처벌 처벌 처벌 조치 조치 조치 내용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근거 내용 구분 일자 구분 일자 근거			
⑰ 자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국내거소신고증의 기재변경지불금납입사항 및 달 소원 주민등록번호)			

[그림 9]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 행정자료

(1)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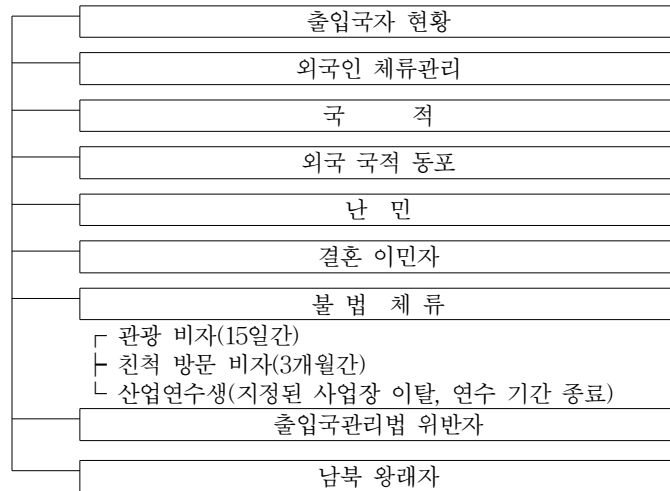
<외국인>은 2005년 인구총조사에서 23만 7,517명으로 집계되어 외국인등록인구 48만 5,477명보다 24만 7,960명이 적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20만 4,254명을 포함할 때보다는 무려 45만 2,214명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실지조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외국인 조사의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신고서, 등록 외국인기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 그리고 체류지변경신고서 작성 결과 입력 자료인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

<표 26>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출입국통계 (A) 1」	계	-	449,377	689,731
	등록인구	123,881	244,172	485,477
	불법체류	-	205,205	204,254
인구총조사 (B) 2」		55,016	150,812	237,517
차이(=B-A)		-	-298,565	-452,214

출처 : 1. 출입국관리통계연보(법무부), 2. 인구총조사 결과 각년도(통계청)



[그림 10] 출입국자 통계의 범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1일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모두 89만1341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6만8000여 명(23%)이 늘어났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43만 7727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 결혼 이주자 14만4385명, 국제결혼가정 자녀 5만8007명, 유학생 5만627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외국인 중 혼인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이들은 7.4%로 파악됐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강정옥 사무관은 “3개월 이내 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외국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용산·광진·동작·성동·서대문 등 6개 구에도 1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에 3만6387명의 외국인이 살아 영등포구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다. 수원·화성시는 2만5000명 안팎이었고, 성남·시흥·부천시를 비롯한 여섯 곳이 1만 명을 넘었다.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에 1만1000~1만3000명이 거주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66%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반면 대구 수성구와 전북 전주시 등 5곳은 외국인 비율이 전체 주민의 0.5%도 안 됐다.

외국인이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58명)이었다.

[중앙일보]2007.07.31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외국인 수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와 한국 국적 취득자, 단위:명



국적별 상위 5개국은

※전체 89만1341명 중 비율, %



외국인 어디 많이 사나

단위:명

서울시 영등포구	3만9793
경기도 안산시	3만6387
서울시 구로구	2만8818
경기도 수원시	2만5019
경기도 화성시	2만4119
서울시 금천구	1만9342

자료:행정안전부

4) 교육 관련 행정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27개 업무를 3개 영역 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만여개 초중고, 특수학교, 182개 지역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시스템이다(교육기본법 제23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27개 업무를 일반행정, 학교행정, 교무업무 등 3개 영역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는 ① 교무업무정보서비스 및 혁신, ② 일반행정정보서비스 및 혁신, ③ Home-Edu 민원서비스, ④ 온라인대입전형서비스, ⑤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 ⑥ 사용자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영역도

교무업무정보서비스 및 혁신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일반행정정보서비스 및 혁신	행정실의 주요 행정업무 처리
Home-Edu 민원서비스,	교육관련 민원서비스 제공
온라인대입전형서비스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 제공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	자녀의 교육과정, 성적, 출결사항, 학사일정,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 조회
사용자 지원서비스	현장 교사, 업무담당자 이용

[그림 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1) 교육정도

<교육정도>는 국민의 교육수준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 수준 및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 등에도 활용된다.

우리나라 센서스에서는 만6세 이상 되는 모든 국민의 교육정도와 재학 상태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지난 1970년 센서스까지는 읽고 쓰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문맹률을 표본조사하였으나, 최근 들어 문맹률이 극히 낮아짐에 따라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전공은 1966년과 1980년, 2000년 센서스에서만 표본조사하였으며, 학년까지 조사한 경우는 1960년 센서스가 유일하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센서스에서 졸업여부와 재학상태를 계속하여 조사하였다. 2000년 센서스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교육으로서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교(3년제 이하, 4년제 이상), 대학원(석·박사))와 이들의 졸업, 수료, 재학, 휴학, 중퇴 여부를 조사하였다. 정규학교가 아닌 학원과 타자, 경리, 부기, 운전기술학원 등은 조사에서 제외된 반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학교(맹아학교 등)는 포함시키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교육정도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과장 응답 경향이 있다. 전공학과는 그 자체만으로 활용도가 낮으며 계열구분도 불분명하고, ECE/Eurotat의 경우 비핵심 사항으로 권고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졸업증명서는 1981년도 이후(1982.1.~) 졸업생에 한해, 제적증명서는 2003년 3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는 2002년도 이후(2003.1.~)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제공된다. 출생(부모)·사망(당사자)·혼인(당사자)·이혼(당사자)신고서에 기재된 교육정도는 1966년부터 조사 되었으나 자료이용은 1991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정도는 현재 완전대체가 어려운 항목임으로 2010년 총조사 자료를 DB화 하여 연계활용하는 구상도 필요하다.

5)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 중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자료는 건축물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가능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고유번호, 시군구_법정동_본번_부번_건축물명칭_동명칭및번호, 주용도명, 세대수, 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층수, 지상층수, 부속건축물동수, 부속건축물면적, 사용승인일자

건축물대장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한계점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사용되는 가사용승인 건물, 폐가, 철거 및 멸실되었는데도 건축물대장에서 삭제되지 않은 건물, 불법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이 있어 실제 건축물수와 대장상의 건축물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현황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사 등을 통해 각 시군구에서 관리중인 ‘건축물대장’의 원천 기본정보의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건축물대장의 변천 역사는 가옥과세대장(1968), 건축물관리대장(1976), 건축물대장(1992~현재 : 항목 증가 21개 → 56개)의 변천 과정을 거쳐 발전되었다. 그러나 1992년 이전 건축물대장의 경우 항목변경으로 필수 입력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정보가 많다. 또한 건축물대장 관련 통계는 2003년까지는 3년마다, 2004년이후는 매년 공표하고 있으나, 1997년 자료는 부재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대장이 없는 건축물 정비, 건축물 자료정비를 통한 건축통계의 선진화 및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제공, 건축물대장의 공적장부로서 신뢰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7.11월~2008.7월 까지 총사업비 3,940백만 원을 투입하여 6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1차)을 시행 중이다.

가) 거처의 종류건물 층수

우리나라의 주택의 종류에 대한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주택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사회변화에 따라 주택이나 거처형태의 개념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 단독주택(일반, 다가구, 영업겸용), 2. 아파트, 3. 연립주택, 4. 다세대주택, 5. 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6. 오피스텔, 7.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8.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⑨ 판잡집, 비닐하우스, 움막, 10.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는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탁(위탁)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 교정(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주택의 종류와 건물의 종류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건축년도,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년도>는 주택의 질이나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게 된다.

또한 <대지면적>은 단독주택에 한해 조사되며, 건물 및 대지 면적별로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는 항목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주택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연면적’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는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전용면적)만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3. 주택에 관한 사항

1.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이 집은 어떤 종류이며, 몇 층 건물입니까?

·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주거 부분이 많거나 더 많으면 ⑤ 상업용 단독주택, 상업용 부분이 더 많으면 ⑥ 비주거용 건물에 주택, ⑦ 세 해당합니다.

① 단독주택 ①-1 일반 단독주택 ①-2 다가구 단독주택 ①-3 경합건물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이면 중대 주택)

⑥ 오피스텔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⑨ 관맛집, 피난하우스, 용박

⑩ 기타

①~③에 해당되면 작성을 하십시오.

문서확인번호	고유번호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2	G4C필수번호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명칭	용이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일반주거지역외의1군 지구)	구역	
건축면적	중적합인경용 면적	건축물종류	주종도	
건폐율	용적률	층고수	세대, 호/가구	층수
		건축물지붕	층수	연면적(㎡)
구분	건축물명칭(번호)	건축물구조	건축물지붕	층수
부				연면적(㎡)
부				연면적(㎡)
부				연면적(㎡)
주	101동			연면적(㎡)
주	102동			연면적(㎡)
주	103동			연면적(㎡)

[그림 14] 거처의 종류 및 건물 층수

2. 연면적

이 주택의 연면적(주거용 연면적은 몇 평 또는 m²입니까?)

· 주거에 사용하는 부분만 기입되되, 소수점 이치는 연용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평당(연면적/세대)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평 (또는 □□□ m²)

3. 대지 면적 (단독주택만 기입합니다)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몇 평(또는 m²)입니까?

· 대지 면적은 당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입에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기입합니다.

□□□ 평 (또는 □□□ m²)

4.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건축 - 계속 면적이 주택 용역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 세 사기를 표시합니다.

① 2005년 ② 2004년
③ 2003년 ④ 2002년
⑤ 2001년 ⑥ 2000년
⑦ 1995 ~ 1999년 ⑧ 1990 ~ 1994년
⑨ 1985 ~ 1989년 ⑩ 1980 ~ 1984년
⑪ 1970 ~ 1979년 ⑫ 1960 ~ 1969년
⑬ 1959년 이전

문서확인번호	고유번호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1/2	G4C필수번호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명칭	용이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지역(일반주거지역외의1군 지구)	구역	
건축면적	중적합인경용 면적	건축물종류	주종도	
건폐율	용적률	층고수	세대, 호/가구	층수
		건축물지붕	층수	연면적(㎡)
구분	건축물명칭(번호)	건축물구조	건축물지붕	층수
부				연면적(㎡)
부				연면적(㎡)
부				연면적(㎡)
주	101동			연면적(㎡)
주	102동			연면적(㎡)
주	103동			연면적(㎡)

[그림 15] 건축년도,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다) 주택의 소유

주택의 소유여부는 점유형태(자가, 전월세, 무상 등)에 관계없이 다른 곳에 주택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항목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주인가구와 주택소유와 혼돈우려가 있어 부실 응답 경향도 있다.

행정자료는 일부 주택의 경우 투기적 목적의 차명소유로 등재되어 실제 소유주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건축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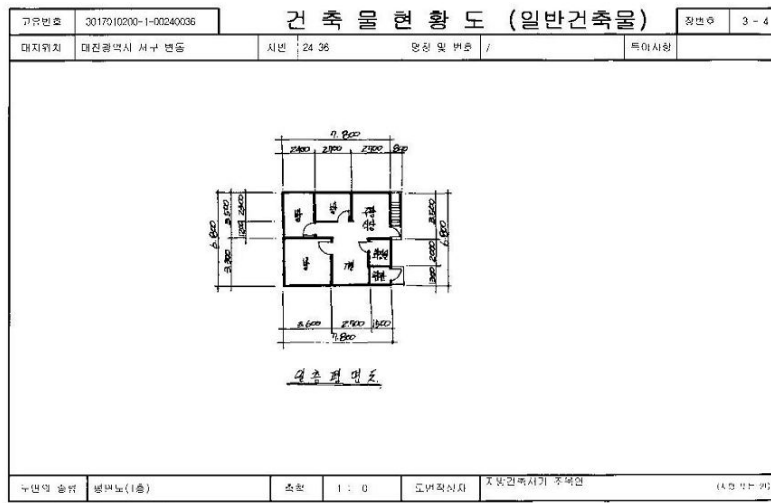
고유번호		지번		명칭및번호		정번호	1-1
대지위치						호명칭	
전유부분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계분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공용부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그림 16] 주택의 소유

라) 총방수

<총방수>는 방, 거실, 식당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를 종류별로 파악하여 주택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주택내의 모든 방수를 조사하며, 주인 또는 대표가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은 물론 다른 가구(세든 가구 등)가 사용하는 방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침실, 서재 등), 거실(대청마루 등), 식당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거처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하여 조사한다. 이와 같이 거실, 식당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과

달리 보는데 따라 이해의 혼돈을 가져온다.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현황도’를 code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형별 공통점이 많아 활용에 유용할 것이다.



[그림 17] 총방수

마) 편익시설

<편익시설>은 거주 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소유 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택 수급 예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조사하며, ‘독립된 출입구’는 옥외에 직접 접해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대문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가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각각의 독립된 출입구로 조사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보통 주출입구(현관문)가 1개 이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은 세를 주기 위해 독립된 출입구를 가진 경우외에 대부분 공동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는 건축물대장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인구 및 가구부문>에서는 가구와의 관계, 상주지, 성명, 성별, 연령, 혼인상태(법률적 관계), 출생지, 국적, 본관이 완전대체하여 이용가능한 항목(9개)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정도, 사실혼 관계, 그리고 남북이산가족은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3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부문>에서는 거처의 종류, 주택용도, 주택의 소유여부, 건축년도, 건물의 종류, 연건평, 대지면적 등이 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7개)으로 나타난 반면, 점유형태, 총방수, 부엌시설, 목욕시설, 화장실시설, 난방시설, 주거시설, 편의시설과 주거용 연면적 등은 불완전대체이용가능 항목(9개)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작성에 활용 항목은 상기 기술된 항목 중 완전대체가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혼인상태의 경우 법률적 관계로 분석). 이는 조사대상에 직접적인 조사에 기초한 통계와 행정등록에 기초한 통계는 조사목적, 조사내용과 범위 등에서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표본조사항목인 전거주지, 거주기간, 건물층수, 동거가구수, 동거자녀수, 별거자녀수, 사망자녀수, 생존아수, 출생아수, 초혼연령, 활동제약 등 15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전수화가 가능하다

그밖에 중요도는 높으나 대체가 어려운 항목중 전수조사항목인 사용방수, 종교와 표본조사항목인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은 표본조사를 병행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자료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행정자료의 활용은 전통적 방식의 센서스가 가지고 있던 비용과 응답부담의 문제점 등은 사라진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행정자료에 오류⁵⁾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이 전통적인 질문지 조사 방식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되는 행정자료는 외형상 동일 항목이라도 개념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 이용 시 문제점(한계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활용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일 행정자료 활용보다도 여타 관련 행정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행정자료 간 연계모형을 생성하여 활용성 증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집되는 자료에 관해 변화가 발생할 경우 통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자료의 활용은 충분한 시행과정과 반복적 검증작업을 거쳐 완결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자료가 생성되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5) 행정안전부(2008.4)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대조 결과 기록상 문제가 있는 10만967명 중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457명(65.9%), 전산화 과정에서 단순착오 기재 1만5천978명(15.8%),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는 일치하나 뒷 7자리가 다른 경우 2천640명(2.6%), 불일치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일치하는 경우 1만5천892명(15.7%)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태현·이삼식·은기수·김정석·박경숙(2003), “2005·2010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항목연구”, 통계청.
- _____(200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통계청.
- 박소현(2007), “자동차 등록자료의 활용방안”, 통계청.
- 이건·강영욱·전명식·이석훈·김규성·이명진·서우석(2007),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통계청.
- 이내성(2006), “인구총조사와 주민등록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기초연구”,
통계청.
- _____(2008), “인구총조사에 주민등록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매칭연
구”, 한국조사연구학회.
- 전명식·이석훈·이건·강영욱(2006), “행정정보를 이용한 정책정보 생
성방법 연구”, 행정정보공유추진단.
- 통계청(2006), “인구대사전”.
- _____(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전수조사용)”.
- _____(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표본조사용 종합편)”.
- _____(2007), “정부승인통계목록”.
- 국토해양부(2008), 법령·자료(<http://www.mltm.go.kr/>)
- 대법원(2008), 정보광장(<http://www.scourt.go.kr/>).
- 법무부(2008), 법무지식(<http://www.moj.go.kr/>)
- 법제처(2008),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업무안내(<http://www.immigration.go.kr/>)
- 통계청(2008),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http://www.nso.go.kr/>).
- 한솔아카데미(2008), 건축관계법규최신정보제공시스템
(<http://www.alaw.co.kr/>)
- 행정안전부(2008), 행정정보(<http://www.mopas.go.kr/>)

<부 록>

□ 항목별 대체(이용)가능성 평가 결과

○ 인구항목

▷ 본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성씨, 본관별 인구현황, 지역별 인구분포 파악 ○ 집성촌 실태 및 분포, 족보연구 등 성씨 본관 연구자료 ○ 신규 성씨 및 본관 발생 현황 등 파악		
조사사항	○ 성씨는 한자로 가구원별로 조사 ○ 고향이나 출생지가 아닌 시조(始祖)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200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가족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출생·혼인·이혼·입양·친양자 입양·개명·성본변경 신고서	
	통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성씨 본관은 한사람의 생애동안 변화가 없어 성씨 본관별 인구변화는 크지 않으며, 역사적인 사료로 가치가 높으나. 창씨 등으로 신규 성씨 본관이 계속 발생	
	행정자료	○ 현재 호주제와 같이 가족제도의 법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며, 가족등록 제도의 시행(2008.1.1)으로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됨 - 협의시 모의 성과 본 사용 가능	
검토 결과	개 념	100	가족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주: ● 전수조사, ○ 표본조사를 나타냄(이하 동일).

▷ 성명·상주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조사대상을 확인하고, 조사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조사사항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기입 ○ 이름이 없는 간난아이는 '홍○○' 등으로 기입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 개명 :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개명신고서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조사자료의 개인비밀보호차원에서 CODING작업을 안함 ○ 조사표 기입시 착오기재의 경우 있음	
	행정자료	○ 일부 행정자료간 상이한 경우 있음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성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남녀간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함	
조사사항		① 남자 ② 여자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다수의 미상 발생 ○ SEX와 GENDER 표기의 이견	
	행정자료	○ SEX : 생물학적이며 행위중심의 성 ※ GENDER :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으로 가치나 신념을 내포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
	포괄범위	100	
	중 합	100	

▷ 연령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나이는 인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학령 인구, 병역인구, 생산연령인구, 가임여성 인구, 고령인구 등 인구를 특성집단별로 구분하는 수단이 됨.	
조사사항		○ 집에서 세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만 나이, 실제 나이)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 실제생년월일 : 출생·혼인·이혼·입양·실종·부재 신고서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중복, 누락율이 높은 연령층의 조사방법 개선 필요 - 20-30대:경제활동, 0-4세 동반가족, 70세 이상 : 고령으로 타지에 부정기 거주 ○ 100세 이상은 주민등록연령과 차이가 크며,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행정자료	○ 실제 나이와 다르게 등재(특히 고령자의 경우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음) - 1999년 인구주택센서스 제3차(도시지역) 및 제4차(농촌지역) 시험조사에서 생년월일중 만연령으로 조사하여 주민등록의 만연령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 90.9%, 농촌지역 87.3% 일치 - 1997년 상주지와 주민등록지 비교연구 결과 1959년 이전 출생 62.2%, 1980년생 이후 93.5%, 1990년 이후 97.7% 일치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에 '출생신고서'등의 실제생년월일을 활용
	포괄범위	100	
	중 합	100	

▷ 가구주와의 관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족구조(핵가족, 확대가족 등)와 가족유형 (1인 가구, 한쪽부모 가구 등)은 물론 가족의 생애주기(생성과 소멸 등)가 파악되며 가구주의 성, 연령, 혼인 상태별 특성을 기초로 장래가구수를 추계하기도 함	
조사사항		○ 가구주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연장자 또는 대표자)을 가구주로 함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가구 :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사실상의 가구주의 개념이 규정상 강조되고 있으나 법 개념상의 가구주와 주관적으로 구분 곤란 ○ 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그 배우자를 찾기 곤란 -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을 경우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부모를 연결하기 곤란	
	행정자료	○ 동일거처에 생활하는 것으로 신고등록된 주민등록상의 단위인 세대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 가족 : 서로 혈연관계가 있거나, 양자 또는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의 집단	
검토 결과	개 념	100 (실질)	주민등록부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실질)	

▷ 혼인상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규모의 변동과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됨.	
조사사항		<p>○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표시함. <미혼>은 지금까지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배우자 있음>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재혼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됨. <사별>은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있는 경우를 말함. · 배우자가 장기간 실종되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시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별에 해당. <이혼>은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별거 포함</p>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 · 사망 · 혼인 · 이혼신고서	
	통계조사	● 인구돌태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p>○ 실제조사 과정에서 혼인상태항목을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로 여겨 응답이 거부되거나 부실응답 우려 상존 ○ ECE/Eurostat 의 경우 법적 혼인상태는 핵심사항이나 사실혼 상태는 권고사항임 ○ 별거에 대한 불분명 - 이혼이 예상되는 별거: 이혼 - 재결합이 예상되는 별거: 유배우 ○ 미혼모의 경우 사회통념상 미혼으로 조사하는게 타당 ○ 동거 -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있음(지침서 기준). - 10대, 20대 초반의 동거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배우 관계로 보지 않음</p>	
	행정자료	<p>○ 법률혼 관계 ※ 신고서의 경우 실제혼인관계 병행조사</p>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 +신고서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혼인년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의 혼인상태 및 혼인시기는 인구규모의 변동은 물론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됨	
조사사항		○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년월을 말하며, 두번 이상 혼인한 경우는 최초 혼인한 시기를 기입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사망·혼인·이혼신고서	
	통계조사	● 인구동태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사생활 문제로 응답거부 및 회피 경향	
	행정자료	○ 법률혼 관계 ※ 신고서의 경우 실제혼인관계 병행조사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 +신고서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총출생아수·생존아수·사망아수·1년간 출생아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국민들의 출생수준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인구규모 및 구조 분석은 물론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실태와 변화 추이 등을 파악, 출산력 간접 추정가능	
조사사항		○ 총출생아수는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만을 대상 ○ 사망한 자녀가 포함, 입양해 온 자녀는 불포함 ○ 미혼모도 기입	
전수/표본조사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출생신고서(총출생아수 및 사망아수) ※ 사산신고서 : 인지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통계조사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영아사망통계조사(보건복지부), ● 인구동태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사생활 문제로 응답거부 또는 회피 경향	
	행정자료	○ 미신고아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 +신고서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교육정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국민의 교육수준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 수준 및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 등에도 활용.	
조사사항		○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정규 교육(각종 특수학교 포함)을 말함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교육정보시스템,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	
	통계조사	● 교육통계연보(각 시도) ● 특수교육통계보고(교육과학기술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과장 응답 경향 ○ 전공학과는 그 자체만으로 활용도가 낮으며 계열구분도 불분명 ○ ECE/Eurostat의 경우 비핵심 사항	
	행정자료	○ 교육정보시스템(NEIS) : 1982년 이후 졸업생부터 이용 가능 ○ 출생(부모)·사망(본인)·혼인·이혼신고서 활용은 1991년 이후부터 가능(최초 작성 1966년)	
검토 결과	개 념	100	교육정보시스템+출생신고서 등 ※ 기초사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연계 활용
	포괄범위	50	
	중 합	75	

▷ 출생지·남북이산가족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률을 파악. 특히 북한출생지 파악으로 이산가족의 규모와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가능.	
조사사항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출생 당시 어머니가 주로 살았던 곳 ○ 출산하였던 병원이나 출산하러 간 친정집 등을 기준으로 기입하여서는 안됨	
전수/표본조사		출생지 : ● 전수조사(2000년), ○ 표본조사(1995년) 남북이산가족 : ● 전수조사(2005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출생신고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	
	통계조사	●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통일부), ● 새터민입국현황(통일부), ● 인구동태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출생 당시의 특성이 반영 안됨	
	행정자료	○ 실제 출생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 있음	
검토 결과	개 념	100, 100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출생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 새터민입국현황 ※ 미등록자 문제점 있음
	포괄범위	100, 50	
	총 합	100, 75	

▷ 국적 및 입국 연도 · 외국인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이중국적이 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적 및 입국 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강제로 취득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적 및 입국 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 새터민은 국적 및 입국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196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국적회복일 및 국적회복전 국적), 출생신고서(이중 국적국가), 귀화신고서(귀화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상실신고서, 출입국신고서, 체류자신고서, 외국인고용신고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이전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이전사항, 해외이주신고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구이동통계(통계청), ● 출입국자현황(법무부), ● 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노동부), ○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행정안전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결혼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현재 국적을 조사하는 것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출생시 국적을 조사.	
	행정자료	○ 지역별 불법체류외국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가족등록부+신고서+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전거주지, 동거가구수, 동거자녀수, 지난1년간출생아수 등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이동의 시기 및 흐름의 양과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동자의 인구·경제·사회적 특성 파악을 통해 도시, 농촌간 또는 대도시 및 수도권 인구 불균형 분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	
조사사항		○ 1년(5년) 전에 현역으로 군복무 중이었던 가구원은 가족의 1년(5년) 전 거주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되, 가구원 간 1년(5년) 전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 당시의 행정구역 명칭이 현재와 다른 경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기입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	
	통계조사	● 인구이동통계(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이동 후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지역명 모르는 경우 다수 있음 <1년전 거주자> ○ 1980, 1990, 2000년 표본조사 ○ 1970, 1975, 1995 조사안함 ○ 1985 전수조사 <5년전 거주자> ○ 표본조사 (단, 1985년 전수조사)	
	행정자료	○ 실제인구이동과 상관없이 기록상의 인구이동(전입일 및 변동일)이 많이 포함됨.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가족등록부
	포괄범위	100	
	중 합	100	

▷ 통근·통학 여부; 장소;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교통 흐름의 방향과 교통량을 시감 및 교통수단 별로 파악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일일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도시 공동화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생활권역 연구에도 중요한 변수로 사용. 	
조사사항		<p><통근합>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 있는 거처 이외의 직장(일터,근무지)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을 의미 <p><통학합>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학원)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를 의미 <p><소요시간>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집에서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 학원으로 다니는데 소요되는 평균시간. -출근 및 등교기준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도로교통량조사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량통계(국토해양부,각 시도), ○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수도권교통본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시기와 이용시기의 갭이 크며, ○ 교통정책에 이용여부. ○ 조사의 어려움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에 대한 교통량이 아니라 차량의 교통량에 한정 ○ 가구통행조사는 수도권에 한정됨 	
검토 결과	개 념	20	조사중지 ※ 시대에 따른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생 및 소멸
	포괄범위	10	
	총 합	15	

▷ 경제활동상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은 물론 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등 일하는 형태등 경제활동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조사사항		<p>지난 일주일동안 수입있는 일을 하였는가를 조사 <주로 일하였음> 돈벌이 또는 생업에 주로 종사한 경우 <가사, 학교(학원)또는 기타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정기적인 직업이 없더라도 1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을 한 경우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을 잠시 쉬고 있음>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연가, 교육, 휴가, 노사분규, 원료부족 및 일기 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없었음> 육아, 가사, 통학, 취업준비, 연로 장애, 군 입대 대기, 혼인준비, 쉬고 있음 등</p>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단, 1985년)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경제활동의 개념, 측정방법, 항목수 내용이 매 조사마다 변경되어 시계열분석 곤란.
검토 결과	행정자료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개 념	50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포괄범위	50	
총 합	50		

▷ 종사상 지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은 물론 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등 일하는 형태등 경제활동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조사사항		<임금 근로자>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그 대가로 봉급,급료,임금 또는 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종업원이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급료를 주는 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항목(단,1960년 전후, 1985년 미조사) ○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 1997년 말 IMF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 고용 형태가 크게 변화됨 (비정규직(예약직, 임시직, 일용직등)증가)
	행정자료	-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포괄범위	50
	총 합	75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산업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파악하지 위해 사업체의 종류별로 취업자가 하고있는 일의 종류를 조사하여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가 일하는 직장·사업체 이름과 이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곡인지 사업내용을 기입하며,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체 이름과 사업내용을 기입.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항목(단, 1960, 1985년 제외) ○ 사생활과 관련 응답거부 또는 회피 경향 ○ 응답자가 가구원 개개인 사업체의 산업을 모르는 경우 있음 	
	행정자료	-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포괄범위	50	
	중 합	75	

▷ 직업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파악하지 위해 사업체의 종류별로 취업자가 하고있는 일의 종류를 조사하여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제공.
조사사항		○ 조사대상자가 일하고 있는 부서 및 직책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기입 하되, 업무(임무)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주된 것을 기입.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항목(단, 1960년, 1985년 전수조사) ○ 새로운 직종의 탄생과 소멸로 정확한 직업분류 곤란 ○ 사생활과 관련 응답거부 또는 회피 경향 ○ 응답자가 가구원 개개인의 하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있음
	행정자료	-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포괄범위	50
	중 합	75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 근로장소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근로장소 및 비공식분야의 고용을 파악하여 자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동및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여성활동의 측정수단으로 여성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도 함.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기입. - 일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경우 가장 주된 직업을 기준 · 일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 주된 활동 기준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명확한 노동의 질 측정이 힘들
	행정자료	-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가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활용
	포괄범위	50	
	중 합	75	

▷ 아동보육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실태, 노인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 및 가족형성 활동과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동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 대상 : 일반가구의 초등학교 아동(12세 이하) ○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보육시설 및 이용자현황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및 이용자통계(여성가족부), ○ 전국 보육교육및육구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과후 아동보육실태조사(여성특별위원회), ○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 및 실제 보육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곤란 ○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는 보육시설에 한정하며, (타)가정내 돌봄 등 비제도권에 대한 파악 곤란 ※ 보육시설의 종류 1. 국·공립보육시설 2. 민간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6. 방과후 교실 7.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8. 장애아 통합,전담 시설 9.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검토 결과	개 념	100	※ 각 기관 통계조사 활용
	포괄범위	50	
	중 합	75	

▷ 활동계약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제약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여 장애 문제와 활동제약자 관련 복지수요파악 등 활동제약자·장애인 복지정책에 사용. ○ 활동제약자·장애인에 관한 모집단 자료를 생성.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적·정신적 장애, 육체적 불편(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고령에 의한 노환 등에 따른 활동 제한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 ○ 6개월 기준은 이미 6개월이 지났거나 앞으로 6개월 이상 제약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장애인현황(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여성가족부), ● 장애인의무고용현황(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및종사자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특수교육통계보고(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국제비교성 ○ 조사의 어려움과 조사에서의 전문적 지식 필요 ○ 시계열 문제 	
	행정자료	○ 미신고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누락 가능	
검토 결과	개 념	100	등록장애인 보고자료 활용(표본조사 → 전수) ※ 조사중지
	포괄범위	100	
	총 합	100	

▷ 고령자 생활비 원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고령자의 경제적인 자립도 분석과 연금 등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 주된 것 두가지만 기입. <예금, 적금>에는 이자수입을 포함. <부동산>에는 매도 및 임대 수입 모두 포함. <주식, 채권,증권>에는 배당금을 포함. <함께사는 자녀>에는 소득없이 생활하면서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 연금 수령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에 해당.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경로연금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국민연금관리공단) ○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 고령자고용현황(노동부), ○ 사회통계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행정자료	○ 자녀,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생활비 원천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20	사회통계조사 활용 ※ 조사증지
	포괄범위	20	
	중 합	20	

▷ 종교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각 종교단체별, 지역별 종교인구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종교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종교인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분석	
조사사항		○ 기독교(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각 종교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보고 자료와 차이가 큼 ○ 가구의 응답자가 어느 특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에 다른 가구원까지 모두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응답 경향.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보호자의 종교로 응답 경향	
	행정자료		
검토 결과	개 념	0	사회통계조사 활용 ※ 조사중지
	포괄범위	0	
	총 합	0	

○ 가구항목

▷ 가구구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의 유형을 집단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일반가구에 대해서만 가구항목을 조사.	
조사사항		<p><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는 가족이외의 사람은 5인 이하인 경우이며, 6인 이상이면 별도의 가구로 분리.</p> <p><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사는 6인 이상의 가구>란 6인 이상 19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하며, 20인 이상의 경우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에 해당.</p>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p>○ 현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대표(사회적, 경제적 등)에 대한 개념이 복잡 다양해 지고 있음 -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가구주 대신 미국식의 ‘참고인’ 개념을 사용 	
	행정자료	- 주인가구와 동거인에 대한 구분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실질)	주민등록부
	포괄범위	100	
	중 합	100	

▷ 거주기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주거의 안정여부를 자가 및 전·월세별로 기간 측면에서 파악.	
조사사항		○ 가구원들이 전입해 온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가장 오래 살아온 가구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표시. ○ 같은 장소에 계속 살았더라도 재개발로 일정기간 다른 곳에 가있었다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실제거주지와 등록지와 상이한 경우 있음	
	행정자료	○ 실제거주지와 등록지와 상이한 경우 있음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사용방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원 수 및 가구원 구성별로 침실수와 사용방수를 파악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	
조사사항		<p><방>이란 원칙적으로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 이상, 넓이 3.3㎡ 이상인 것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서재, 옷방, 놀이방 등과 같이 방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고나(창고적 기능)사용하지 않는 방 등은 제외 - 거실, 식당도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원룸은 침실 1개, 거실은 없는 것으로 기입. -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에 대한 정의가 국제기준과 달라 애매 - 거실, 식당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 부족 - 부엌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 이용방수의 정의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에 국한되어 있음 ○ 아파트 비중 및 1가구 1주택 점유비율이 증가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의미의 사용방을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없음 ○ 일반적 의미의 방수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의 code화 필요 	
검토 결과	개 념	0	※ 건축물대장으로 집계 곤란
	포괄범위	0	
	종 합	0	

▷ 건물층수 및 거주층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우리나라 주택의 건물 층수에 대한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반지하 옥탑방등 거주 공간의 질을 파악.	
조사사항		○ 가구가 있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기입하되, 위치별로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함(지하 및 옥탑은 층수에서 제외). <지하(반지하)>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1/2 이상인 경우를 말함. <지상00층>은 건물 전체의 층수가 아닌 실제 살고 있는 층수를 기입함.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총호수, 건축물 명칭(번호), 층수)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행정자료	○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의 경우 거주층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건축물대장 활용
	포괄범위	80	
	중 합	90	

※: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단위 : 천 호, %)

○ 주택총수	13,222 (100.0)
- 단독주택	4,264 (32.2)
- 아파트	6,962 (52.7)
- 연립주택	559 (4.2)
- 다세대주택	1,229 (9.3)
- 비거주용 건물내	209 (1.6)

▷ 난방시설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난방시설 형태를 가구형태 및 지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 장단지 에너지 수급정책의 기초 자료, 주거설비 기준 및 노후도 지표로 활용.	
조사사항		○ 난방시설이2개 이상인 경우 비용에 관계없이 주로 사용하는 것 하나만 기입. <중앙난방>은 공동주택 단지별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은 대규모의 열생산 시설(열병합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에서 일정 지역 전체에 걸쳐 난방을 보급하는 방식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등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총조사(지식경제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행정자료		
검토 결과	개 념	100	건축물대장 및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활용
	포괄범위	80	
	총 합	90	

▷ 식수 사용 형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지역별로 식수의 유형을 파악하여 주택 및 환경정책 자료로 사용.	
조사사항		○ 마시는 물(식수)의 ;형태가 2가지 이상이거나, 가구원별로 다른 경우에는 주로 마시는 것 하나에만 표시. <약수를 떠서 먹음>은 공원이나 야산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200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상수도통계,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현황(국토해양부) ● 상수도통계(국토해양부)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조사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표본조사	
	행정자료	○ 상수도를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 경우 등을 파악할 수 없음 ※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조사는 행정보고를 통해 용도 및 세부용도별로 전수조사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기타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 - 농어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기타 - 기타 : 온천수, 먹는 샘물, 기타	
검토 결과	개 념	90	상수도통계,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조사 등 활용
	포괄범위	90	
	종 합	90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수요예측과 가구특성별 정보화 수준을 파악.		
조사사항	○ 보유하거나 이용중인 것을 모두 기입하되, 개인용 컴퓨터는 보유대수를 기입. <인터넷 회선>에는 유선(ADSL, 광랜, FTTH 등) 또는 무선인터넷을 말함. <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로 제공되는 방송을 말함.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200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 정보화실태조사(통계청 2001,2002),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행정안전부), ○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이용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M ○ 주한외국인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 농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급변하는 IT 분야를 5년 마다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성이 없음	
	행정자료	○ 해당 행정자료 없음	
검토 결과	개 념	0	조사중지 or 통계조사 활용
	포괄범위	0	
	종 합	0	

▷ 자동차 보유 대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당 자동차 보급 및 주차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의 질 측면에서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관계없이 가구에서 보유하여 사용중인 자동차의 종류와 수를 기입. ○ 회사 소의 차를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출·퇴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포함 ○ 자신의 소유라도 회사에 놓고 다니면 제외 <승용차(10인승 이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함. · 레저용 차량도 10인승 이하이면 승용차에 해당 <승합차(11인승 이상)>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말함. · 버스포함 - 중장비나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않음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자동차등록원부(차종, 용조, 년식, 사용본거지(차고지), 소유자 및 주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현황(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가계자산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파악 곤란	
	행정자료	○ 회사의 차를 실질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90	주민등록부+자동차등록원부 ※ 표본조사 → 전수화
	포괄범위	100	
	종 합	95	

▷ 주차시설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당 자동차 보급 및 주차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의 질 측면에서 자동차 대중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야간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때 가구에서 주로 주차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하되, 보유하고 있는 차가 2대 이상이고 주차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주된 주차 장소 2곳만 기입. ○ 노외 주차장은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비용을 받는 도로 유효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주차선이 그려진 곳) 거주가 우선 주차 포함>에 해당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옥내 및 옥외, 주차대수, 면적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장소와 실제 주차장소가 상이한 경우 있음 ○ 건축물대장으로는 노상, 거주지 우선주차 등에 대해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 표본조사 → 전수화
	포괄범위	50	
	총 합	75	

▷ 가구소득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의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소지역 단위의 자료 생산이나 가계조사의 표본추출의 기본 자료로 활용.	
조사사항		○ 임금근로자는 세금을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기입 ○ 개인 사업자는 총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기입 ○ 농수산물은 판매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입. 소득이 현문(쌀, 보리 및 공업제품 등)일 경우에는 그 현물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기입 ○ 가구 전체 총 소득이란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계. ○ 실업자가 취업을 해서 12개월이 안된 경우 및 신규취업자의 취업기간이 12개월이 안된 경우 등은 실제 취업기간의 금액을 소득으로 봄.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199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국세통계(국세청),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가계조사(통계청), ○ 사회통계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소득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의문	
	행정자료	비공식부문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조사중지 or 통계조사 및 원부 활용
	포괄범위	80	
	총 합	90	

▷ 임차료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자가 및 전·월세등 주거실태, 주택보급률, 주택 임차료 수준 등 주택 보유와 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항목.	
조사사항		<p><자기 집>은 법률상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집</p> <p><전세(월세 없음)>는 전세금만 내고 세들어 사는 경우로</p> <p><전세·보증금>란에만 전세 금액을 기입하되, 세든 사람이 일부 방을 다시 세놓은 경우에는 원래의 전세 액에서 다른 가구에 세를 놓아 받는 전세액 또는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p> <p><보증금 있는 월세>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내는 경우로 <전세·보증금>과 <월세(사글세)>에 모두 기입</p> <p><보증금 없는 월세>는 보증금 없이 집세(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로 <월세(사글세)>란에만 그 금액을 기입</p> <p><사글세(00개월)>는 1년 또는 10개월치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 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로,(00)에는 계약 개월수를 기입하고 <월세 (사글세)>란에는 전체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1개월분을 기입</p> <p><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은 세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p>	
전수/표본조사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p>● 임대주택통계(국토해양부),</p> <p>○ 가계조사(통계청)</p> <p>○ 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p>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행정자료	<p>○ 정부 및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임대주택(2007년 14.6만 호)에 대해서만 파악 가능</p> <p>○ 소비자물가, 주택조사(국민은행)는 표본조사</p>	
검토 결과	개 념	10	조사중지 or 타 통계조사 활용
	포괄범위	1	
	중 합	6	

▷ 타지 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주인가구 여부는 주택에 관한 항목을 해당 주택에서 1 가구만 조사하기 위해 만든 항목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점유형태(자가, 전·월세, 무상 등)에 관계없이 다른 곳에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택소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항목.	
조사사항		○ 주인가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되, 여러가가 세를들어 함RP 살고 있다면 그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함. ○ 주택 소유여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 <다른 곳에 주택 소유>는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인가구>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소유자 현황), 등기부(건물)	
	통계조사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주택소유현황(국토해양부), ● 주택보급률(국토해양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고안) ● 직업군인주택보급률현황(국방부), ○ 주거실태및수요조사(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주인가구와 주택소유 혼돈 우려 ○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등으로 부실 응답 우려	
	행정자료	○ 실질 소유주와 법률적 소유주 구분 곤란 ○ 주인가구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100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or 등기부)
	포괄범위	100	
	종 합	100	

○ 주택항목

▷ 거처의 종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 대한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주택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	
조사사항		<단독주택>인 경우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여부를 조사.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용도)	
	통계조사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에 따라 거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념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여 재정립 필요 ○ 주거부정자(homeless)에 대한 조사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개념 모호하여 조사에 혼란 초래(2000) ○ 주택이외의 거처 중 일부 거처(예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표현상 애매하여 교회 등 비영리 건물내 주택 등에 적용 곤란 	
	행정자료	○ 총조사와 거처의 종류 불일치	
검토 결과	개 념	90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포괄범위	90	
	종 합	90	

▷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건물 및 대지 면적별로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택의 종류 및 지역별로 파악.	
조사사항		○ 주거용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을 기입. - 차고, 창고, 외양간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 ○ 대지면적은 단독주택인 경우만 기입. - 주거용 부분만 포함하며,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 담장(울타리)내의 텃밭을 제외한 전 면적 포함 · 따라서 담장(울타리)내의 정원도 포함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거처 유형의 다양화 ○ 주거부정자(homeless)에 대한 조사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개념 모호하여 조사에 혼란 초래(2000) ○ 주택이외의 거처 중 일부 거처(예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표현상 애매하여 교회 등 비영리 건물내 주택 등에 적용 곤란 ○ ‘주택정보’를 활용하나 많은 부분이 응답자의 기억력에 의존	
	행정자료	○ 주거용 연면적의 경우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파악 곤란	
검토 결과	개 념	50	건축물대장
	포괄범위	50	
	종 합	50	

▷ 총방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방, 거실, 식당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를 종류별로 파악하여 주택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사항		○ 주택내의 모든 방수를 조사하며 주인 또는 대표가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방은 물론 다른 가구(세든가구등)가 사용하는 방도 모두 포함하여 기입. ○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침실, 서재 등), 거실(대청마루 등), 식당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기입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기거하고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방에 대한 정의가 국제기준과 달라 애매 - 거실, 식당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 부족 - 부엌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 아파트 비중 및 1가구 1주택 점유비율이 증가	
	행정자료	○ 일반적 의미의 방수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의 code화 필요	
검토 결과	개 념	50	건축물대장,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포괄범위	50	
	중 합	50	

▷ 건축년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주택의 질이나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게 됨.	
조사사항		○ 신축시기를 조사하여야 하나, 증축·개축면적이 주택 총 면적(주거용 연면적)의 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시기에 표시. ○ 여러차례 증축이 되었을 경우 가장 최근의 증축시리를 표시 ○ 건축 연도는 건물이 완공되어 최초 입주가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 일자.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건축물대장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 기억에 의존한 응답	
	행정자료		
검토 결과	개 념	100	건축물대장 및 아파트주거환경통계
	포괄범위	100	
	중 합	100	

▷ 편익시설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거주 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인구 주택 총 조사에서 소유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택수급 예측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제공.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에 설치된 각각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총수를 기입. ○ 부엌에 거실이나 식당과 구분되지 않아 독립된 출입구는 옥외에 직접 접해 있는 출입구를 말함. ○ 단, 대문을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각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현관문(출입구)이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있게 되어 있으면 각각의 현관문을 별도의 독립된 출입구로 간주하여 기입(이 경우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대문은 독립된 출입구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은 건물의 출입구와 관계없이 각 호의 현관문을 독립된 출입구로 간주. ○ 재래식 단독주택(구가옥 등)은 직접 외부와 접해있는 출입구만을 독립된 출입구로 봄. 	
전수/표본조사		● 전수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문제점 (한계점)	총조사		
	행정자료		
검토 결과	개 념	100	건축물대장
	포괄범위	50	
	종 합	75	